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관련 法令規集

2004. 1.20.(화)

목 차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관련 法令規	2
시행령(대령).....	2
[별표 1](개정 2001. 1.27).....	2
[별표 2](개정 2001. 1.27).....	2
[별표 3](개정 2001.12.19).....	2
[별표 4](개정 2001.12.19).....	2
[별표 5].....	2
[별표 6](개정 2001.12.19, 2003. 7.30).....	2
[별표 7].....	2
[별표 8](개정 2001.12.19, 2003.7.30).....	2
[별표 9].....	2
시행규칙(부령).....	2
[별표 1].....	2
[별표 2].....	2
[별표 3].....	2
II. 개별기준.....	2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2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2
관세법제 145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에관한고시	2
마약류 감시업무지침	2
몰수마약류 관리 지침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2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	2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관련 法令規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法律 第 6146 號 2000.01.12 제정(전면제정) 法律 第 6824 號 2002.12.26 개정(마퇴본부) 法律 第 7098 號 2004.01.20 개정(치료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第 1 章 總 則</p> <p>第 1 條(目的) 이 法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誤用 또는 남용으로 인한 保健上의 危害를 방지하여 國民保健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2.12.26)</p> <p>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麻藥類"라 함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p> <p>2. "麻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葉</p> <p>나. 양귀비·아편 또는 코카葉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p> <p>다. 가목 내지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化學的 合成品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p> <p>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다만, 다른 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있으나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것(이하 "限外麻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p>	<p>제정 2000.07.01 대통령령제 16884 호 개정 2001.01.27 대통령령제 17110 호 개정 2001.12.19 대통령령제 17431 호 개정 2003.07.30 대통령령제 18078 호</p> <p>제 1 조 (목적) 이 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①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2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1 과 같다.</p> <p>②법 제 2 조제 2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은 별표 2 와 같다.</p>	<p>제정 2000.07.01 보건복지부령제 160 호 개정 2003.11.17 보건복지부령제 263 호</p> <p>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 (한외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2 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p> <p>1. 100 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 그램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 밀리리터당 100 밀리그램이하)이고, 1 회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 밀리그램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3. 第2號가目的 양귀비·아편·코카葉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가.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슴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液汁이 凝結된 것과 이를 加工한 것(醫藥品으로 加工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葉"이라 함은 코카灌木(에리드록시론屬의 모든 植物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向精神性醫藥品"이라 함은 人間의 中樞神經系에 作用하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人體에 현저한 危害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目的 1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가.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醫療用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安全性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 나.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醫療用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p>	<p>③법 제 2 조제 4 호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 내지 별표 7 과 같다.</p>	<p>는 염기로서 10 밀리그램이하이며, 마약성분외의 유효성분이 3종이상 배합된 제제 2. 100 밀리리터당 또는 100 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 밀리그램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 회용량이 2.5 밀리그램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 회용량이 0.5 밀리그램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 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제제</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우 심한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p> <p>다. 가目 및 나目에 規定된 것보다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醫療用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身體的 依存性 또는 심한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는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p> <p>라. 다目에 規定된 것보다 誤用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醫療用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誤用 또는 남용할 경우 다目에 規定된 것보다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藥物이나 이를 함유하는 物質</p> <p>마. 가目 내지 라目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混合物質 또는 混合製劑. 다만, 다른 藥物이나 物質과 混合되어 가目 내지 라目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製造 또는 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身體的 또는 精神的 依存性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保健福祉部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p>		<p>제 3 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①법 제 2 조제 4 호 마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 2 조제 4 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한 제제는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는 제제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2 조제 4 호 다목 또는 라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복합제제의 주성분이 아니어야 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의 성분이 2종이상 함유한 것이 아닐 것 2. 복합제제에 함유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함량은 복합제제의 1 일복용량에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당해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시 허가된 1 일용량(이하 “허가용량” 이라 한다)의 2 분의 1 이하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양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에 신경계 작용약물이 함유된 복합제제는 그 함유된 성분 상호간에 상승작용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피라비탈, 알로피라비탈, 싸이크로피라비탈등 바르비탈류의 분자화합물의 제제는 이에 함유된 바르비탈의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5. "大麻"라 함은 大麻草(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樹脂 및 大麻草 또는 그 樹脂를 原料로 하여 製造된 일체의 製品을 말한다. 다만, 大麻草의 種子·뿌리 및 성숙한 大麻草의 줄기와 그 製品을 제외한다.</p> <p>6. "麻藥類取扱者"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者로서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者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p> <p>가. 麻藥類輸出入業者 : 麻藥의 輸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の 輸出入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p> <p>나. 麻藥類製造業者 :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の 製造(製劑 및 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p> <p>다. 麻藥類原料使用者 : 限外麻藥 또는 醫藥品을 製造함에 있어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p> <p>라. 大麻栽培者 : 纖維 또는 種子를 채취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는 者를 말한다.</p> <p>마. 麻藥類都賣業者 : 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麻藥類管理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에게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함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p> <p>바. 麻藥類管理者 :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藥師로서 그 醫療機關에서 患者에게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の 調劑·授受 및 管리의 책임을 진 者를 말한다.</p> <p>사.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 : 學術研究를 위하여 麻藥</p>		<p>용량을 계산하여 그 제제의 1 일 복용량에 함유된 당해 성분의 함량이 각각 허가용량의 2분의 1 이하로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양일 것</p> <p>5. 학술연구목적의 시약은 연구시험용으로 제조되고 단위당 함량이 1그램이하일것</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사용하거나, 大麻草를 栽培하거나 大麻를 輸入하여 사용하는 者를 말한다.</p> <p>아. 麻藥類小賣業者 : 藥事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藥局開設者로서 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處方箋에 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調劑하여 販賣함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p> <p>자. 麻藥類取扱醫療業者 : 醫療機關에서 醫療에 종사하는 醫師 · 齒科醫師 齒科醫師 · 漢醫師 또는 獸醫師法에 의하여 動物診療에 종사하는 獸醫師로서 醫療 또는 動物診療의 目的으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2002.12.26)</p> <p>7. "原料物質"이라 함은 麻藥類가 아닌 물질 중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26)</p> <p>8. "原料物質取扱者"라 함은 原料物質의 제조·수출입·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2.12.26)</p> <p>9. "軍需用麻藥類"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麻藥類를 말한다. (신설 2002.12.26)</p> <p>10. "치료보호"라 함은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치료와 외래통원치료를 말한다.(신설 04.01.20)</p> <p>第3條(一般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한 麻藥類의 사용 2. 麻藥의 輸出 3.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의 栽培 또는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의 소지·소유·관리·輸出入· 	<p>④ 법 제 2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은 별표 8 과 같다(신설 2003.7.30)</p> <p>제 3 조 (일반행위 금지의 예외) ①법 제 3 조제 3 호 단서 또는 동조제 4 호 또는 동조제 5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취급 등 마약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 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賣買·賣買의 알선·授受 및 그 成分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4. 디아세칠모르핀, 그 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의 소지·소유·관리·輸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授受·運搬·사용·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5.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할 目的으로 原料物質을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소지 또는 소유하는 행위 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2.12.26)</p> <p>6. 第2條第4號가目的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이를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관리·輸出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7. 第2條第4號가目的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에서 그 成分을 추출하거나 그 植物을 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授受·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吸煙 또는 攝取의 目的으로 그 植物을 소지·소유하는 행위.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8. 大麻를 輸入 또는 輸出하는 행위. 다만,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아 輸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9. 大麻(大麻草를 제외한다)를 製造하는 행위. 다만,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받아 製造하는 경우에는</p>	<p>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p> <p>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p> <p>②법 제 3 조제 6 호 단서 또는 동조제 7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食品의약품안전청장의 尙정신성의약품취급 등에 관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양에 한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3. 마약류제조업자가 시험용으로 尙정신성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갑류무역대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尙정신성의약품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p>③법 제 3 조제 8 호 단서 또는 동조제 9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대마가 필요한 경우 食品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직접 수출입 또는 제조(제제 및 소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p>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마다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이를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食品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4 조 (취급승인신청)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 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승</p>

麻薬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②麻薬類取扱者は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麻薬類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5 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①법 제 4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마약류취급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p>	<p>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임상연구나 시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경우 2. 의약품제조업자등이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p>2의2. 의약품을 분류·포장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작하는 자가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신설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부득이 마약류 취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의 수출자의 위임을 받은 무역거래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마약류의 구매의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 <p>②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제 1 항 각호의 1 에 해당되어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6 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신청) 영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취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취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③第 1 項第 3 號의 規定에 의하여 大麻를 運搬·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 部승으로 정한다.</p> <p>第 5 條(麻藥類取扱의 제한) ①麻藥類取扱者는 그 業務외의 目的을 위하여 第 4 條第 1 項 本文에 規定된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이 法에 의하여 麻藥類를 소지·소유·運搬 또는 관리하는 者는 다른 目的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輸入·輸出(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 6 조 (마약류취급의 금지 및 제한) ①법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의 수요량 및 보유량을 참작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입 또는 수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품종의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과 동일한 품종의 품종 또는 품목의 마약을 국내의 공급여건 등을 참작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3.7.30)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마약을 장기 또는 계속하여 투약하거 	<p>제 7 조 (대마의 운반·보관 등) ①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보관 또는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대마를 인계하기까지 신고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 style="text-align: center;">第2章 許可 등</p> <p>第 6 條(麻藥類取扱者の 許可・지정) ①麻藥類取扱者が 되고자 하는 者は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 1 號・第 2 號 및 第 4 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第 3 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第 5 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藥事法에 의한 輸入者로서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醫藥品 品目許可를 받거나 品目申告를 한 者 2.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는 藥事法에 의하여 醫藥品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 3. 麻藥類都賣業者는 藥事法에 의하여 登録된 藥局開設者 또는 醫藥品都賣商의 許可를 받은 者 4.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는 學術研究를 위하여 麻藥類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者 5. 大麻栽培者는 纖維 또는 種子를 採取할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하고자 하는 者 <p>②麻藥類管理者가 되고자 하는 者は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있는 醫療機關에서 근무하는 藥師로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の 指定를 받아야 한다. 指定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p>	<p>제 8 조 (허가의 신청) ①법 제 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2. 약사법에 의한 수입품목허가(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가 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3.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제조업허가증 사본(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4. 정관과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1.17)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 개이상의 품목별 허가를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p> <p>③법 제 6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과 동시에 당해 신청서에 마약류도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명기</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③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麻藥類輸出入業者·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 또는 大麻栽培者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精神患者 또는 麻藥類의 中毒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p>④第 44 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許可取消處分을 받고 2 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指定取消處分을 받고 1 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p>		<p>한 경우에는 마약류도매업자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④법 제 6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법 제 6 조제 3 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연구계획서 및 그 자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법 제 6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요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 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p>⑤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법 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법 제 6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중 대마재배자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재배지·재배면적·재배목적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에 한한다.</p> <p>⑦제 1 항 및 제 3 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9 조 (허가증 교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마약류취급자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p> <p>제 10 조 (지정의 신청) ①법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第7條(許可證 등의 교부와 登載) ①第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指定을 하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名簿에 登載하고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교부</p>		<p>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약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수수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 라 한다)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지정서 교부)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 8 호서식에 의한 마약류관리자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2 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①법 제 6 조제 1 항 본문 후단 또는 동조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9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 일 이내에 당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허가(지정)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13 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 14 조 (명부등재사항) 법 제 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허가업소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第 6 條第 1 項 또는 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指定를 받은 者가 그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p> <p>第 8 條(許可證 등의 讓渡禁止와 廢業 등의 申告 등) ①麻藥</p>		<p>나.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p> <p>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연락처 나.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p> <p>제 15 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①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0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유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때에 한한다) 2. 허가증 또는 지정서(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③제 1 항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16 조 (폐업등의 신고) 법 제 8 조제 2 항 및 동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그 상속인·후견인 및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허가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類取扱者는 그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대여하거나 讓渡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麻藥類取扱者가 麻藥類取扱에 관한 業務를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그 休業한 業務를 再開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에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p> <p>③麻藥類取扱者가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各號의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에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死亡한 때 : 相續人(相續人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無能力者가 된 때 : 後見人 3. 法人이 解散한 때 : 清算人 4. 學술연구를 종료한 때 :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신설 2002.12.26) <p>④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였거나 第 2 項 또는 第 3 項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⑤許可官廳은 第 4 項 및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許可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許可 또는 지정의 取消處分을 하거나, 그 業務의 停止處分을 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名簿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16 조(폐업 등의 신고) ①법 제 8 조제 2 항의 規定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취급에 관한 業務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業務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1 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업 또는 업무 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허가증 2. 폐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나. 제 32 조의 規定에 의한 수출입 · 제조품목허가증 <p>②법 제 8 조제 3 항의 規定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후견인 또는 청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또는 무능력자가 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별지 제 11 호의 2 서식의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제 17 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①법 제 8 조제 4 항 및 법 제 44 조의 規定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가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p> <p>②법 제 8 조제 5 항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당해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p> <p>③허가관청은 법 제 44 조의 規定에 의하여 취급업무의 정지</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麻藥類의 관리</p> <p>第 9 條(授受 등의 제한) ①麻藥類取扱者は 麻藥類取扱者が 아닌 者로부터 麻藥類를 讓受할 수 없다. 다만, 第 13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麻藥類取扱者は 이 法에서 정한 경우외에는 麻藥類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品目許可의 取消로 인하여 소지·소유 또는 관리하는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다른 麻藥類取扱者에게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2.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 또는 麻藥類取扱의 승인을 얻은 者에게 麻藥類를 讓渡하고자 하는 경우 <p>③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가 다른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에게 麻藥類(製劑를 제외한다)를 讓渡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26)</p> <p>第 10 條(購入書·販賣書) ①麻藥類取扱者は 다른 麻藥類取扱者와 麻藥을 賣買 기타 授受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가 발행하는 麻藥購入書 및 麻藥販賣書의 用紙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署名 또는 捺印하여 교환하여야 한다.</p> <p>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購入書 및 麻藥販賣書는 교환한 날부터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제 7 조 (구입서·판매서) ①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취급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및 교부에 관한 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 및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를 한 때에는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이면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기간을 적어 넣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마약류취급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p> <p>제 18 조 (마약류 양도승인신청) 법 제 9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18 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 9 조제 2 항 단서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신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 호서식의 신청서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신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제 19 조 (마약류원료의 양도승인신청) ①법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원료의 양도승인을 신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마약원료의 양도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약원료 적정수급을 위하여 양도승인전에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게 마약류 원료의 양도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있는 날부터 10 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삭제(2003.11.17)</p> <p>제 20 조 (마약의 구입서 및 판매서) ①법 제 10 조 및 영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별지 제 13 호서식에 의한다.</p> <p>②법 제 10 조 및 영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4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마약취급자에게 발행·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第 11 條(記錄의 整備) ①麻藥類取扱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급하는 麻藥에 관하여 帳簿를 비치하고 輸入·製造·調劑·讓受·讓渡·投藥·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學術研究를 위하여 사용한 麻藥의 品名, 數量, 使用日, 相對者의 住所, 姓名 및 相對者가 麻藥類取扱者인 경우에는 그 種別과 許可證番號를 이에 記錄하여야 한다.</p> <p>②麻藥類取扱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向精神性醫藥品의 販賣·授受에 관한 帳簿를 작성·비치하고,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 또는 授受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재하고 買受人 또는 讓受人의 署名 또는 捺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麻藥類小賣業者가 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處方箋에 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調劑하여 販賣하는 경우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向精神性醫藥品에 대하여는 그 署名 또는 捺印을 생략할 수 있다.</p> <p>③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당해 醫療機關에서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에 대하여는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麻藥類管理者가 記錄하여야 한다.</p>		<p>15 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및 별지 제 16 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각각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 21 조 (기록의 정비) ①법 제 11 조제 1 항 및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를취급하는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는 별지 제 17 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마약류소매업자는 별지 제 18 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②법 제 11 조제 3 항 및 법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은 별지 제 19 호서식에, 향정신성의약품은 별지 제 20 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③법 제 35 조제 2 항 및 동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 21 호서식에 의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 21 조 (기록의 작성·비치) ①법 제 11 조·제 31 조 및 제 38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도매업자 : 별지 제 17 호서식의 관리대장 2. 마약류소매업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지 제 18 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마약 : 별지 제 19 호서식의 관리대장 나. 향정신성의약품 : 별지 제 20 호서식의 관리대장 <p>②법 제 35 조제 2 항·제 3 항 및 제 38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 21 호서식의 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③영 제 12 조의 2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부는 별지 제 21 호의 2 서식과 같다.</p> <p>④마약류취급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는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第12條(事故麻藥類의 처리) 麻藥類取扱者 또는 麻藥類取扱의 승인을 얻은 者는 그 소지하는 麻藥類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麻藥類取扱醫療業者의 경우에는 당해 醫療機關의 開設許可 또는 申告官廳, 麻藥類小賣業者의 경우에는 藥局開設登錄官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災害로 인한 상실 2. 紛失 또는 盜難 3. 變質·腐敗 또는 破損 <p>第13條(資格喪失者의 麻藥類 처분) 麻藥類取扱者(麻藥類管</p>		<p>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p> <p>제22조 (서명등의 생략)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마약류취급자가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영 별표 6 및 영 별표 7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다.</p> <p>제23조 (사고마약류의 처리 등)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마약류의 보고를 받은 해당 허가관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한한다.</p> <p>④마약류취급자는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신청을 받은 해당허가관청은 당해 폐기처분대상 마약류가 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이를 소각하여 폐기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방법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①법 제13조 본문의</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理者를 제외한다)가 第 8 條 및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 資格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麻藥類取扱者·相續人·後見人·清算人 및 合併後 存續 또는 新設된 法人은 보유하고 있는 麻藥類를 保健福祉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麻藥類取扱者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相續人 또는 法人이 麻藥類取扱者인 경우에는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이를 讓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大麻栽培者의 相續人이나 그 相續財産의 管理人·後見人 또는 法人이 大麻栽培者가 되고자 申告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第 6 條第 1 項第 5 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第 14 條(廣告) ①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에 관하여는 醫學 또는 藥學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新聞이나 雜誌에 의한 廣告외의 방법으로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廣告에 관한 기준은 保健福祉部가 정한다.</p>		<p>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법 제 8 조 및 법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양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 13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25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 시·도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는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20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제 25 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 1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항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우수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는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나. 적응증상을 서술적 또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광고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남용하게 할 염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第 15 條(마약류의 貯藏) 麻藥類取扱者와 第 4 條第 1 項第 3 號 내지 第 6 號의 規定에 의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p>	<p>제 8 조 (마약의 저장장소)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저장장소는 마약을 취급하는 자의 일소안에 있어야 한다. 삭제(2003.7.30)</p>	<p>다.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나 기타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신용하고 있다는 등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의사·치과의사·수의사 또는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상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하여 그 사용자의 감사장이나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구입·주문채도 기타 이와 유사한 뜻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방법, 효능이나 효과 등에 관하여 광고에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의학 또는 약학상 인정된 문헌에 한하여 인용하되,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하게 전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8.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광고할 때에는 다른 의약품·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방하거나 비난한다고 의심되는 광고 또는 외국제품과 유사하다거나 보다 우수하다는 내용 등의 모호한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사은품 또는 현상품을 제공하거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26 조 (마약의 저장)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의약품의 저장장소와 별도로 구획된 곳에 저장할 것</p>

<p>麻薬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麻薬을 다른 醫藥品과 구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場所에 貯藏하여야 한다.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에 대하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p> <p>第 16 條(封緘) ①麻薬類輸出入業者 및 麻薬類製造業者는 그 輸入 또는 製造한 麻薬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容器 또는 포장에 保健福祉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가 발행하는 封緘證紙로 封緘하여야 한다. 다만, 向精神性醫藥品 製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마약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p> <p>3. 마약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p> <p>제 26 조 (마약류의 저장)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의 저장장소(대마의 저장장소를 제외한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 4 조제 1 항제 3 호 내지 제 6 호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할 것 2.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 3.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 다만, 마약류소매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4. 대마의 저장장소에는 대마를 반출 · 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와 다른 사람의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p>제 27 조 (봉합증지의 교부신청) 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합증지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6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수입상황보고서 또는 생산원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8 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봉합) ①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지 제 27 호서식에 의한 봉합증지로, 수입 또는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별지 제 28 호서식에 의한 봉합증지로 봉합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②麻藥類取扱者は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封緘을 하지 아니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授受하지 못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 17 條(容器 등의 기재사항)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限外麻藥의 容器·포장 또는 添附文書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p>	<p>제 9 조 (불합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법 제 16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불합을 하지 아니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수하는 경우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수하는 경우 3.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및 시험용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수수하고자 하는 경우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손 또는 파손된 불합증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제 1 항 규정에 의한 불합은 그 불합증지를 파손하지 아니하면 내용을 꺼낼 수 없도록 밀봉하여야 한다.</p> <p>④마약류수출입업자 또는 마약류제조업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증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 29 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오손 또는 파손된 불합증지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9 조 (불합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수 승인신청) 법 제 16 조제 2 항단서 및 영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0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30 조 (용기등의 기재사항)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기재하여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상호 및 주소 2. 제품명(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에 실려있는 명칭을 말하고 그 명칭이 실려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명칭을 말한다) 3. 수입허가번호 또는 제조번호 제조번호 (개정 2003.11.17) 4. 중량·용량 또는 개수 5. 대한약전에 실려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 향정신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 style="text-align: center;">第 4 章 麻藥類取扱者</p> <p>第 18 條(麻藥類輸出入業者) ①麻藥類輸出入業者가 아니면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하지 못한다.</p> <p>②麻藥類輸出入業者가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第 2 項의 경우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許可의 取消處分을 받고 1 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品目の 許可를 하지 못한다.</p>		<p>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에 있어서는 "대한약전"이라는 문자와 대한약전에서 용기나 포장에 기재하도록 정하여진 사항 (개정 2003.11.17)</p> <p>6. 적색으로 표시된 "마약" · "향정신성" 또는 "한외마약"이라는 문자</p> <p>7. 저장방법 ·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p> <p>8. 대한약전에 실려있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명칭이 있는 것은 일반명칭 및 분량을 말한다) (개정 2003.11.17)</p> <p>9. 성 상</p> <p>10. 효능 · 효과</p> <p>11. 방부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 및 분량</p> <p>제 31 조 (준용) 제 30 조에 규정된 것외의 용기등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약사법시행규칙 제 71 조 내지 제 7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p> <p>제 32 조 (수출입 · 제조품목허가신청등) ①법 제 18 조제 2 항, 법 제 21 조제 2 항 또는 법 제 2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 · 수출 수출(향정신성의약품에 한한다) 또는 제조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1. 약사법시행규칙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 유효성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 년 경과되지 아니한 것 또는 안전성 · 유효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p> <p>2. 약사법시행규칙 제 2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통지서로서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다만, 대한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공정서 및 의약품에 실려 있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p> <p>3.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12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동일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제형이 다른 동일 투여경로의 품목을 포함한다)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p> <p>4. 임상시험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인 경우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자료 삭제(2003.11.17)</p> <p>5. 수입품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당해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신약으로 개발 중인 품목으로서 임상시험 목적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p> <p>가. 당해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국가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당해 품목을 허가하거나 등록받은 국가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p> <p>5. 수입품의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당해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이 경우 첨부서류의 요건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3.11.17)</p> <p>가. 당해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조증명서</p> <p>나. 당해 품목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의 권한이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당해 품목이 당해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판매증명서</p> <p>6.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하는 약효동등성 의약품동등성인증</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이 필요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인 경우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개정 2003.11.17)</p> <p>②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2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원료물질의 수입허가공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2 호서식의 신청서에 대외부역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서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48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수입승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17)</p> <p>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33 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①법 제 18 조제 2 항 후단, 법 제 21 조제 2 항후단 또는 법 제 24 조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 33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허가증 및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34 조 (품목허가증등) 제 32 조제 1 항 및 제 3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 34 호서식에 의한 품목허가증을</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第 19 條(輸出入의 보고) 麻藥類輸出入業者가 麻藥을 輸入하거나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輸入 또는 輸出入에 관한 사항과 輸入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販賣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第 20 條(輸入한 麻藥 등의 販賣) 麻藥類輸出入業者는 輸入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麻藥類製造業者·麻藥類原料使用者 및 麻藥類都賣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지 못한다.</p> <p>第 21 條(麻藥類製造業者) ①麻藥類製造業者가 아니면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하지 못한다. ②麻藥類製造業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 18 條第 3 項의 規定은 第 2 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22 條(製造한 麻藥 등의 販賣) ①麻藥類製造業者는 製造한 麻藥을 麻藥類都賣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②麻藥類製造業者가 製造한 向精神性醫藥品은 麻藥類輸出入業者·麻藥類都賣業者·麻藥類小賣業者 또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외의 者에게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p> <p>第 23 條(麻藥 등의 製造報告) 麻藥類製造業者가 麻藥 또는</p>		<p>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취급자의 상호·종별 및 허가번호 2. 제품명 3. 품목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4. 품목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변경허가한 경우에 한한다) <p>제 35 조 (수출입·제조 현황보고) ①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을 수입하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출입한 때에는 별지 제 35 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는 마약 또는</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 및 販賣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第 24 條(麻藥類原料使用者) ①麻藥類原料使用者가 아니면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한 限外麻藥 또는 醫藥品을 製造하지 못한다.</p> <p>②麻藥類原料使用者가 限外麻藥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第 18 條第 3 項의 規定은 第 2 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 25 條(麻藥類의 原料使用報告) 麻藥類原料使用者가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原料로 사용하여 限外麻藥 또는 醫藥品을 製造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第 26 條(麻藥類都賣業者) ①麻藥類都賣業者는 그 營業所가 所在하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内の 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療業者·麻藥類管理者 또는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외의 者에게 麻藥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麻藥類都賣業者는 麻藥類學術研究者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麻</p>		<p>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을 제조한 때에는 별지 제 36 호서식에 의한 생산완료보고서를 생산이 완료된 날 부터 10 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법 제 19 조, 법 제 23 조 및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별지 제 37 호서식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 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 36 조 (원료사용보고)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원료사용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는 매반기 종료 후 20 일 이내에 별지 제 38 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藥類都賣業者·麻藥類小賣業者·麻藥類取扱醫藥業者 또는 麻藥類管理者외의 者에게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許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p> <p>第 27 條(麻藥의 都賣報告) 麻藥을 취급하는 麻藥類都賣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에 관한 사항을 당해 許可官廳에 보고하여야 한다.</p> <p>第 28 條(麻藥類小賣業者) ①麻藥類小賣業者가 아니면 麻藥類取扱醫藥業者가 발부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에 의하여 調劑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販賣하지 못한다. 다만, 麻藥類取扱醫藥業者가 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調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麻藥類小賣業者는 그 調劑한 處方箋을 2 年間 보존하여야 한다.</p> <p>第 29 條(麻藥의 小賣報告) 麻藥類小賣業者가 麻藥을 販賣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에 관한 사항을 藥局 所在地의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第 30 條(麻藥類取扱醫藥業者) 麻藥類取扱醫藥業者가 아니면 醫藥 또는 動物診療의 目的으로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지 못한다.</p> <p>第 31 條(麻藥投藥의 記錄) ①麻藥類取扱醫藥業者는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患者의 住所, 姓名(動物인 때에는 그 種類 및 所有者의 住所·姓名), 年齡, 性</p>	<p>제 10 조 (마약의 조제판매) 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부한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한 마약을 판매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마약의 투약) 법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료 또는 동물진료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조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37 조 (도·소매 보고등) ①법 제 27 조, 법 제 29 조 및 법 제 3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월 마약의 판매 또는 사용실적이 기재된 별지 제 39 호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다음달 10 일까지 당해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別, 病名, 主要症狀 및 投藥한 麻藥의 品名·數量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한 麻藥의 品名·數量 및 年月日에 관한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記錄은 2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에 있어서는 당해 麻藥類管理者가 그 記錄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p> <p>第 32 條(處方箋의 기재) ①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處方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藥事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調劑할 수 있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診療記錄簿에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의 品名과 數量을 기재하고 이를 직접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麻藥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處方箋에 發付者의 住所·業務所在地 業務所在地·商號 또는 명칭 및 免許番號를 記入하여 署名 또는 捺印하고 處方箋을 받은 患者의 住所·姓名·性別·年齡·病名 및 交付年月日을 記入하고 그 記錄을 一般醫藥品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은 이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p> <p>第 33 條(麻藥類管理者) ①4 人이상의 麻藥類取扱醫療業者가 醫療에 종사하는 醫療機關의 代表者는 그 醫療機關에 麻藥類管理者를 두어야 한다. 다만, 向精神性醫藥品만을 취급하는 醫療機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第1項의 麻藥類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p>	<p>제 12 조 (기록의 인계) 법 제 3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에는 당해 醫療機關의 代表者는 다른 麻藥類管理者(다른 麻藥類管理者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麻藥類管理者가 決定 될 때까지 당해 醫療機關에 중사하는 麻藥類取扱醫療業者)에게 관리중의 麻藥類를 引繼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8 條第 4 項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管理者 指定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指定이 取消되거나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p>第 34 條(麻藥 등의 관리) 麻藥類管理者가 있는 醫療機關이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麻藥類管理者가 당해 醫療機關에서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할 目的으로 구입 또는 관리하는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이 아니면 이를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지 못한다.</p> <p>第 35 條(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 ①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가 아니면 麻藥類를 學術研究의 目的에 사용하지 못한다.</p> <p>②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가 麻藥을 學術研究에 사용하거나, 大麻草를 栽培하거나 大麻를 輸入하여 學術研究에 사용한 때에는 保健福祉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大麻草 栽培의 現況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연구에 관한 帳簿를 작성하고, 이를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p> <p>③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가 向精神性醫藥品을 學術研究에 사용한 때에는 保健福祉部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 및 研究에 관한 帳簿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2 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p> <p>④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 2 항 및 제 3 항 規定에 의하여 작성한 帳簿를 2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p>	<p>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 11 조제 3 항 및 법 제 31 조제 3 항의 規定에 의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p>	<p>②법 제 35 조제 2 항의 規定에 의하여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반기의 대마초의 재배 및 연구현황을 매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10 일까지 별지 제 40 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第 36 條(大麻栽培者の 보고) ①大麻栽培者は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麻草의 栽培面積과 生産現況 및 數量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大麻栽培者は 그가 栽培한 大麻草중 그 種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燒却·埋沒 기타 그 流出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結果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第 37 條(許可 등의 제한) 許可官廳은 第 6 條·第 18 條·第 21 條 및 第 24 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麻藥類의 誤用 또는 濫용으로 인하여 國民保健上 危害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特定地域 또는 特定品目을 한정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特定地域 또는 特定品目에 관한 사항은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p> <p>第 38 條(마약류취급자 등의 管理義務) ①麻藥類製造業者 또는 麻藥類原料使用者는 그 業務에 종사하는 從業員의 指導·監督 및 品質管理 기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限外麻藥에 관한 業務에 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麻藥類取級者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002.12.26)</p> <p>③麻藥類取級者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약품 麻藥類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p>	<p>제 12 조의 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 38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p>	<p>제 38 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법 제 3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 회(전반기에는 5 월 31 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 월 30 일까지)별지 제 41 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39 조 (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 3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별지 제 42 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40 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 38 조 법 제 38 조의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도록 그 제조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2.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제조소에 두지 아니할 것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002.12.26)</p> <p style="text-align: center;">第 5 章 麻藥類中毒者</p> <p>第 39 條(麻藥使用의 금지) 麻藥類取扱醫療業者는 麻藥의 中毒者에 대하여 그 中毒症狀를 완화하게 하거나 治療하기 위하여 麻藥을 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麻藥을 기재한 處方箋을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第 40 條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第 40 條(麻藥類中毒者의 治療保護)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麻藥類使用者의 麻藥類中毒 여부를 判別하거나 麻藥類中毒者로 判명된 者를 治療保護하기 위하여 治療保護機關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p> <p>②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麻藥類使用者에 대하여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에서 麻藥類中毒 여부를 判別檢査를 받도록 하게 하거나 麻藥類中毒者로 判명된 者에 대하여 治療保護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別檢査期間은 1 月이내로, 治療保護期間은 6 12 月이내로 한다.(개정 2004.01.20)</p> <p>③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は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治療</p>	<p>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취급자가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할 것 2.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할 것 3.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p>제 13 조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법 제 39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의 투약은 법 제 4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참작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행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할 것. 5.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등에 의하여 유효성분의 함량등을 정확하게 생산할 것. 6.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 제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관리할 것 7. 제조소의 제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기록을 작성·비치할 것. 8. 제조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을 제조한 경우 별표 2의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할 것 <p>제 41 조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신청) 법 제 39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 43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保護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p>④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判別檢査 및 治療保護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治療保護審査委員會를 둔다.</p> <p>⑤第 1 項 내지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의 설치·운영 및 지정, 判別檢査 및 治療保護, 治療保護審査委員會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6 章 監督과 團束</p> <p>第 41 條(出入·檢査와 收去) ①許可官廳은 麻藥類의 취급을 監視하고 團束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麻藥類取扱者의 業務所·工場·倉庫·大麻草栽培地·藥局·調劑場所 기타 麻藥類에 관계가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그 構造·設備·業務狀況·記錄書類·醫藥品 또는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試驗용으로 필요한 分量에 한하여 麻藥類 및 麻藥類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藥品을 保健福祉部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收去하게 할 수 있다.</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麻藥類 및 原料物質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麻藥類取扱者 및 原料物質取扱者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麻藥類 및 原料物質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 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p> <p>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또는 收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第 42 條(廢棄命令 등) ①許可官廳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p>	<p>제 14 조 (행정처분 및 명령) 법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p>	<p>제 42 조 (수거증 등)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를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 44 호서식에 의한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麻藥類나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麻藥類 및 第 16 條·第 17 條·第 18 條·第 21 條 또는 第 24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販賣·貯藏 또는 輸入한 向精神性醫藥品이나 불량한 向精神性醫藥品 등을 公衆衛生上の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麻藥類取扱者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p> <p>②許可官廳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자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大麻栽培者가 第 3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向精神性醫藥品 등 또는 大麻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 3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 3 조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p>第 43 條(業務報告 등) 許可官廳은 麻藥類取扱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帳簿 및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p> <p>第 44 條(許可 등 取消와 業務停止) ①麻藥類取扱者가 다음 각號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許可官廳은 이 法에 의한 許可(品目許可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取消하거나</p>	<p>한 폐기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법 제 4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에 의하고, 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압류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그 業務 또는 麻藥類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國民保健에 危害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경우에는 그 取扱者에게 歸責事由가 없고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또는 限外麻藥의 成分·處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許可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6條第3項第2號에 해당하는 때 2. 禁錮 이상의 刑을 받은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 기타 麻藥類에 관한 法令을 위반한 때 5. 大麻栽培者가 正當한 이유없이 2年間 계속하여 大麻草를 栽培하지 아니한 때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p> <p>第45條(聽聞) 許可官廳은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類取扱者의 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p> <p>第46條(課徵金處分) ①許可官廳은 麻藥類取扱者에 대하여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停止處분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を 賦課할 수 있다. 이 경우 課徵金の 賦課는 業務停止處分으로 인하여 國民保健에 큰 危害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賦課할 수 없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 및 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の 金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③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を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p>	<p>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의하여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p> <p>제1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중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p>	<p>제43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p> <p>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第 47 條(不正麻藥의 처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이 法 기타 麻藥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 소지·소유·사용·관리·栽培·輸出入·製造·賣買·賣買의 알선·授受·投藥 또는 投藥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調劑 또는 研究에 사용하는 麻藥에 대하여는 押留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第 48 條(麻藥類監視員) ①第 41 條第 1 項 및 第 4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職務와 기타 麻藥類에 관한 監視業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麻藥類監視員을 둔다.</p> <p>②麻藥類監視員의 資格·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 領令으로 정한다.</p>	<p>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p> <p>제 17 조 (마약류감시원) ①법 제 4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약학관련 학과 또는 법학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1년 이상 약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행정 관서에서 1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p>②법 제 4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 	<p>제 45 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법 제 48 조 및 영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 45 호서식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第 49 條(麻藥類 名譽指導員) ①麻藥類의 誤用·남용을 방지하고 弘報·啓蒙 등을 행하기 위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에 麻藥類 名譽指導員을 둘 수 있다.</p> <p>②麻藥類 名譽指導員의 資格·業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2.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등이 금지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의 취급 원료물질취급자 및 취급업소에 대한 감시·출입·검사 및 감독(개정 2003.7.30)</p> <p>3.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의마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한의마약 또는 이와 관계있는 의약품의 수거</p> <p>4.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의 지원</p> <p>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적어 넣고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18 조 (마약류명예지도원) ①법 제 4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소비자관련 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의약관련 협회·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회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관련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3. 보건행정 관서에서 1 년 이상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마약류관련 수사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p>②법 제 4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계몽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p>③마약류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연</p>	<p>제 46 조 (마약류명예지도원증 교부) 법 제 49 조 및 영 제 18 조의 규정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 46 호서식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第 50 條(麻藥類取扱者の 教育) ①麻藥類取扱者(大麻栽培者를 제외한다)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麻藥類 관리에 관한 教育을 받아야 한다.</p> <p>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 관리에 관한 教育의 방법·횟수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p>	<p>임은 관련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p> <p>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을 해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3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관련단체로부터 퇴직 또는 해임되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p>⑥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제 47 조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①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및 마약류학술학술연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법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개정 2003.11.17)</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하되, 그 교육을 받을 시기는 법제 2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로 한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의 오·남용이 심각하거나 마약류의 계속된 도난·분실로 인하여 주의를 촉구</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할 필요성이 있거나 마약류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에 1회에 한하여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11.17)</p> <p>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되, 그 계획에는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2 회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⑤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합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저장에 관한 사항 2.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 및 제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 및 제품에 대한 자가시험 관련기록의 작성·비치에 관한 사항과 용기등에의 기재에 관한사항 (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에 한한다) 3.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한다) 4. 기타 마약류 관련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 <p>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대장을 관리하여야한다.</p> <p>⑦시·도지사는 약사법 제 13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 또는 의료법 제 2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第 51 條(원료물질의 관리) ①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26)</p> <p>①第 3 條第 5 號의 規定에 의한 原料物質(이하 이 條에서 "原料物質"이라 한다)을 大統領수입 證하는 數量이상 輸出入·授受 또는 販賣하는 者는 去來</p> <p>②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이하 이 조에서 "거래"라 한다)에 대한 記錄을 작성하고 이를 2 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藥事法에 의하여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去來 제조·거래의 경우 2.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하여 去來 제조·거래에 대한 記錄을 작성·보존하고 있는 제조·거래의 경우 3. 原料物質複合劑의 去來 제조·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合法的인 去來로서 大統領 수입이 정하는 去來의 경우 5. 대통령령이 정하는 數量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신설 2002.12.26) <p>②原料物質을 製造·輸出入 또는 販賣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原料物質取扱者"라 한다)</p> <p>③원료물질취급자는 다음 각 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지체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原料物質의 購買目的이 불확실하거나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不法製造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去來의 경우 2.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數量 이상의 原料物質의 盜難 또는 所在不明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p>③第 2 項</p> <p>④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申告한 原料物質取扱者나 申告를 받은 公務員은 그 사항에 대하여 秘密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p>	<p>제 19 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별 최저거래량 등) 법 제 51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가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는 원료물질별 최저거래량은 별표 8 과 같다.</p> <p>제 19 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①법제 51 조제 2 항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는 다음 각호의 거래로 한다.(전문개정 2003.7.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의 경우 :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2. 수출의 경우 :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거래 3. 수수 및 매매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p>②법제 51 조제 2 항제 5 호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원료물질의 최대거래량은 별표 8 과 같다.</p> <p>제 20 조 (합법적 거래) 법 제 51 조제 1 항제 4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의 경우 : 생산국 정부가 발행하는 제조·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2. 수출의 경우 :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수출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3. 수수·매매의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p>제 20 조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 및 승인절차 등) ①법 제 51 조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는 별표 8 중 1 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로 한다. 다만, 약사법·식품위생법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원료물질을 제외한다.(전문개정 2003.7.30)</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료물질수출입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p>	<p>제 48 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거래등의 신고등) ①법 제 51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3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영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數量 이상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 47 호서식에 의한 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p>제 48 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①법 제 51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 2 조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 47 호서식의 원료물질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영제 1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 47 호의 2 서식의 원료물질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제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 51 조제 2 항 제 51 조제 3 항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 48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p> <p>③법 제 51 조제 5 항 및 영 제 20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8 호의 2 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에, 원료물질의 수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48 호의 3 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7)</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2002.12.26) ⑤제 1 항의 승인을 얻어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승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2.12.26) ④第1項 및 第2項 ⑥제 2 항 및 제 3 항의 規定에 의한 去來記錄 제조·거래記錄의 작성·보존 및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 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p> <p style="text-align: center;">第7章 補 則</p> <p>第51條의 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본조신설 2002.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p>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 1 항의 사업을 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원료물질수출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하였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원료물질취급자·수입국·수출국·수량 및 용도 등이 포함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20 조의 2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①법 제 51 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60 일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30) ②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第 52 條(麻藥類關係資料의 蒐集) 保健福祉部長官 및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政府 各 機關으로부터 이 法 기타 麻藥類關係法令의 施行에 관한 사항을 蒐集하며, 麻藥類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 53 條(沒收麻藥類의 처분방법 등) ①이 法 기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沒收된 麻藥類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引繼하여야 한다.</p> <p>②市·道知事は 第 1 項의 麻藥類를 引受한 때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③第 2 項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1. 법 제 51 조의 2 제 1 항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p> <p>2. 법제 51 조의 2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p> <p>제 21 조 (몰수마약류의 폐기방법) 시·도지사는 법 제 5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마약류를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p> <p>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p> <p>2. 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회석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p> <p>3.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 미터 이상의 지중에 매몰하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부상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p> <p>제 22 조 (몰수마약류의 처분) ①법 제 53 조제 2 항에서 "기타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고, 시·도지사가 이에 공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필요한 양에 한하여 연구용으</p>	<p>제 49 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①법 제 5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한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장은 별지 제 49 호서식에 의한 마약류인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마약류를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 50 호서식에 의한 인수증을 인계한 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 51 호서식에 의한 인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 50 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2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
<p>第 54 條(報償金) 이 法 기타 法令이 規定하는 麻藥類에 關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하거나 檢舉한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報償金을 支給한다.</p>	<p>로 쓰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고자 하는 경우 3. 몰수마약류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등이 된 것으로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공급받 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 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로 지정되어 몰수마약류를 양수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가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시·도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 23 조 (신고·고발) ①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②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구술에 의한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신고 또는 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24 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①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 행령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 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장 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p>	

<p>麻薬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第 55 條(手數料) 이 법에 의한 許可 또는 지정, 許可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나 許可證 또는 指定書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p> <p>第 56 條(權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 56 條의 2(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p>	<p>한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25 조 (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신고·고발 또는 검거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정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마약류범죄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벌금액·추정금액과 몰수품 또는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의 100 분의 25 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 26 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지급상황을 적어 넣어야 한다.</p> <p>제 27 조 (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2 종 이상의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로 본다.</p> <p>제 28 조 (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 6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 연구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관리·조제·투약·수수·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에 관하여는 이를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26)</p> <p>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p> <p>第 57 條(다른 法律의 적용)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의 제조·관리 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藥事法의 規定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8 章 罰 則</p> <p>第 58 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無期 또는 5 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3 條第 2 號 내지 第 4 號, 第 4 條第 1 項, 第 18 條第 1 項 또는 第 21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輸出入·製造·賣買나 賣買의 알선을 한 者 또는 輸出入·製造·賣買나 賣買의 알선을 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2. 第 3 條第 5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할 目的으로 그 原料가 되는 物質을 製造·輸出入하거나 製造·輸出入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3. 第 3 條第 6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가 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하거나 製造·輸出入·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4. 第 3 條第 7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가 目的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에서 그 成分을 추출한 者 또는 그 植物을 輸出入하거나 輸出入할 目的으로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 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양도의 승인(개정 2003.7.30) 3. 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4. 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상실 등에 따른 소지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5. 법 제 16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6. 법 제 3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마약 및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보고와 대마초 재배보고의 접수 7. 법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와 수거에 관한 업무 8. 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폐기처분 9. 법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0. 법 제 4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11. 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마약의 처분 12. 법 제 49 조 및 이 영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해촉 및 그 운영 13. 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 원료사용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본조신설 2001·1·27]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로 소지·소유한 者</p> <p>5. 第3條第8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輸入 또는 輸出한 者나 輸入 또는 輸出할 目的으로 大麻를 소지·소유한 者</p> <p>6.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2條第4號나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p> <p>7.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成年者에게 麻藥을 授受·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授受·調劑·投藥·교부한 者</p> <p>②營利의 目的 또는 常習으로 第1項의 行위를 한 者는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に 處한다.</p> <p>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④第1項(第7號를 제외한다) 및 第2項에 規定된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59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に 處한다.(개정 2002.12.26)</p> <p>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授受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限外麻藥을 製造한 者</p> <p>2.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出入·賣買 또는 製造의 目的으로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 栽培하거나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를 소지·소유한 者</p> <p>3.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苗를 관리·授受 또는 그 成分을 추출하는 行위를 한 者</p> <p>4. 第3條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디아세틸모르핀이나 그 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授受·運搬·사용 또는 投藥하거나 投藥하기 위하여 교</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부하는 행위를 한 者</p> <p>5. 第 3 條第 5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할 目的으로 그 原料가 되는 物質을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한 者 또는 賣買, 賣買의 알선, 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한 자(개정 2002.12.26)</p> <p>6. 第 3 條第 6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가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者</p> <p>7. 第 3 條第 7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가目的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 賣買·賣買의 알선 또는 授受한 者 또는 賣買·賣買의 알선·授受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p> <p>8.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다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質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p> <p>9. 第 4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類(大麻를 제외한다)를 취급한 者</p> <p>10. 第 18 條第 1 項·第 21 條第 1 項 또는 第 24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輸出入 또는 製造하거나 醫藥品을 製造한 者</p> <p>11.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의 輸出·賣買 또는 製造를 目的으로 大麻草를 栽培한 者</p> <p>12. 第 3 條第 9 號 또는 第 10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製造하거나 賣買·賣買의 알선을 한 者 또는 大麻의 製造나 賣買·賣買의 알선을 目的으로 大麻를 소지·소유한 者</p> <p>13. 第 3 條第 11 號 또는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未成年者에게 大麻를 授受·교부하거나 大麻 또는 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게 한 者</p> <p>②常習으로 第 1 項의 罪를 범한 者는 3 年이상의 有期懲役に</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處한다.</p> <p>③第 1 項(第 6 號를 제외한다) 및 第 2 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④第 1 項第 12 號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10 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p> <p>第 60 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10 年이하의 懲役 또는 1 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5 條第 1 項·第 2 項, 第 9 條第 1 項, 第 28 條第 1 項, 第 30 條, 第 35 條第 1 項 또는 第 39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하거나 그 處方箋을 교부한 者 2. 第 3 條第 1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第 2 條第 4 號가目的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사용하거나 同條第 12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 또는 第 2 條第 4 號가目的의 向精神性醫藥品과 관련된 금지된 行위를 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 運送手段을 타인에게 제공한 者 3.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나目 및 다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질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賣買의 알선·授受·소지·소유·사용·관리·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한 者 4. 第 4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 2 條第 4 號라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질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製造 또는 輸出入하거나 製造 또는 輸出入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 <p>②常習으로 第 1 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 分の 1 까지 加重한다.</p> <p>③第 1 項 및 第 2 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 61 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5 年이하의 懲役 또는 5 千萬元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3 條第 3 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 栽培하거나 그 成分을 함유하는 原料·種子·種 苗를 소지·소유한 者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2. 第3條第7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2條第4號가目的의 向精神性醫藥品의 原料가 되는 植物을 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吸煙·攝取할 目的 또는 하게 할 目的으로 소지·소유한 者</p> <p>3.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第2條第4號가目的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또는 大麻를 사용하거나 同條第1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第2條第4號가目的의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및 大麻와 관련된 금지된 行위를 하기 위한 場所·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을 타인에게 제공한 者</p> <p>4.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2條第4號라目에 해당하는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그 物질을 함유하는 向精神性醫藥品을 賣買·賣買의 授受·授受·소지·소유·사용·관리·調劑·投藥·교부한 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을 기재한 處方箋을 발부한 者</p> <p>5. 第5條第1項·第2項, 第9條第1項 또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 또는 大麻를 취급한 者</p> <p>6. 第28條第1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한 者</p> <p>7.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栽培·소지·소유·授受·運搬·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者</p> <p>8. 第3條第1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하거나 大麻·大麻草種子의 껍질을 吸煙 또는 攝取할 目的으로 大麻·大麻草種子 또는 大麻草種子의 껍질을 소지한 者 또는 그 情을 알면서 大麻草種子·大麻草種子의 껍질을 賣買 또는 賣買의 授受를 한 者</p> <p>②常習으로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分の1 까지 加重한다.</p> <p>③第1項第3號 내지 第8號 및 第2項(第1項第1號·第2號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處罰한다.</p> <p>第 62 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3 年이하의 懲役 또는 3 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8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의 취급에 관한 許可證 또는 指定書를 貸與·讓渡한 者 또는 第 9 條第 2 項·第 3 項, 第 18 條第 2 項, 第 20 條, 第 21 條第 2 項, 第 22 條第 1 項, 第 24 條第 2 項, 第 26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2. 第 9 條第 2 項, 第 20 條, 第 22 條第 1 項, 第 26 條第 1 項의 위반행위의 相對方이 되어 麻藥을 취급한 者 <p>②常習으로 第 1 項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 分の 1 까지 加重한다.</p> <p>③第 1 項 및 第 2 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 63 條(罰則) ①다음 各 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2 年이하의 懲役 또는 2 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2.12.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10 條, 第 11 條第 1 項·第 3 項 및 第 4 項, 第 16 條, 第 28 條第 2 項, 第 31 條, 第 32 條, 第 33 條第 1 項, 第 34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2. 第 10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購入書 또는 販賣書, 第 11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 第 31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 또는 第 3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處方箋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3. 第 12 條, 第 17 條, 第 19 條, 第 23 條, 第 25 條, 第 27 條, 第 29 條, 第 33 條第 2 項, 第 35 條第 2 項, 第 43 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보고, 申告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4. 第 13 條, 第 33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 5. 麻藥을 취급하는 者로서 正當한 理由없이 第 41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 檢査, 收去 또는 수거 등을 거부,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第 47 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개정 2002.12.26)</p> <p>6.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 그 業務를 행하여 麻藥을 취급한 者</p> <p>7. 第 40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을 正當한 이유없이 이탈한 者 또는 이탈한 者를 은닉한 者</p> <p>8. 第 40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中毒判別檢査 또는 治療保護를 正當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9. 第 51 條第 1 項 第 51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作成義務를 회피할 目的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原料物質을 거래한 者(개정 2002.12.26)</p> <p>10. 第 51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 第 4 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개정 2002.12.26)</p> <p>11. 第 8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의 취급에 관한 免許證 또는 指定書를 貸與·讓渡한 者 또는 第 9 條第 2 項·第 3 項, 第 20 條·第 22 條第 2 項 또는 第 28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p> <p>12. 第 9 條第 2 項·第 20 條 및 第 22 條第 2 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p> <p>13. 第 18 條第 2 項 또는 第 21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p> <p>14. 第 8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의 취급에 관한 許可證을 貸與·讓渡한 者 또는 第 9 條第 2 項·第 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p> <p>15. 第 9 條의 2 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大麻를 취급한 者</p> <p>②常習으로 第 1 項第 7 號·第 11 號 내지 第 15 號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罪에 정하는 刑의 2 分の 1 까지 加重한다.</p> <p>③第 1 項第 7 號·第 11 號 내지 第 15 號 및 第 2 項에 規定된 罪의 未遂犯은 處罰한다.</p> <p>第 64 條(罰則) 다음 各 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1 年 이하</p>		

<p>麻薬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 8 條第 2 項·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申告를 한 者 2. 第 14 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 11 條第 3 項·第 4 項, 第 13 條, 第 16 條, 第 26 條第 2 項, 第 32 條第 1 項·第 3 項, 第 33 條第 2 項, 第 34 條 또는 第 35 條第 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4. 第 26 條第 2 項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5. 第 12 條, 第 17 條, 第 19 條, 第 23 條, 第 25 條 또는 第 33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申告 또는 기재를 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6. 第 13 條, 第 33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麻薬類取扱 者에게 向精神性醫藥品을 讓渡 또는 引繼하지 아니한 者 7. 第 11 條第 2 項, 第 35 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 또는 受給臺帳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8.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하는 者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하는 자 또는 原料物質取扱者로서 正當한 이유없이 第 41 條第 1 項, 第 42 條 또는 第 43 條의 規定에 의한 命을 위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檢査·收去 수거·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개정 2002.12.26) 9.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 중에 그 業務를 행하여 向精神性醫藥品을 취급한 者 10. 第 12 條, 第 35 條第 2 項, 第 36 條 또는 第 43 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命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申告를 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 11. 第 36 條第 2 項 또는 第 42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폐기하지 아니 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기피한 者</p> <p>12. 第 13 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p> <p>13. 大麻를 취급하는 者로서 正當한 理由없이 第 41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臨檢·檢査 또는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14. 第 44 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 중에 그 業務를 行하여 大麻를 취급한 者</p> <p>15. 제 15 조의 規定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者(신설 2002.12.26)</p> <p>16. 제 35 조제 2 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 4 항의 規定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신설 2002.12.26)</p> <p>17. 제 38 조제 2 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 또는 사용한 者(신설 2002.12.26)</p> <p>第 65 條(罰則) 第 15 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 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삭제 2002.12.26)</p> <p>第 66 條(資格停止 또는 罰金の 併科) ①第 58 條 및 第 59 條에 정한 罪에 대하여는 10 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1 億원 이하의 罰金을 併科할 수 있다.</p> <p>②第 60 條 내지 第 64 條에 정한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5 年이하의 資格停止 또는 各 해당 條의 罰金(懲役に 處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併科할 수 있다.</p> <p>第 67 條(沒收) 이 法에 規定된 罪에 제공한 麻藥類 및 施設·裝備·資金 또는 運搬手段과 그로 인한 收益金은 沒收한다. 다만, 이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p> <p>第 68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麻藥類業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 億원(大麻의 경우에는 5 千萬원)이하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第 61 條 내지 第 65 條 第 61 條 내지 第 64 條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경우에는 그 해당 條에서 정한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2.12.26)</p> <p>附 則(제 6146 호. 2000.1.12)</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2條(廢止法律) 麻藥法·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및 大麻管理法은 이를 각각 廢止한다.</p> <p>第3條(免許·許可·지정·승인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麻藥法·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또는 大麻管理法(이하 "從前法律"이라 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麻藥輸入業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輸出入業者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는 第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輸出入業者로, 麻藥製造業者·麻藥製劑業者·麻藥小分業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製造業者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는 第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製造業者로, 限外麻藥製劑業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原料使用者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는 第6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原料使用者로, 麻藥都賣業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都賣業者로 免許 또는 지정을 받은 者는 第6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都賣業者로, 麻藥取扱學術研究者·向精神性醫藥品學術研究者 또는 大麻研究者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은 者는 第6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取扱學術研究者로, 大麻栽培者로 許可를 받은 者는 第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大麻栽培者로 본다.</p> <p>②이 法 施行당시 從前法律의 規定에 의한 麻藥管理者 또는 向精神性醫藥品管理者로 免許 또는 지정을 받은 者는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管理者로 본다.</p> <p>③이 法 施行당시 從前法律의 規定에 의한 麻藥輸入品目·麻藥製造品目·麻藥製劑品目·麻藥小分品目の 許可, 限外麻藥製劑品目許可, 向精神性醫藥品輸出入品目·向精神性</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및 대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③(마약류감시원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마약감시원·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 또는 대마감시원은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④(다른 법령의 개정)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중 "마약법 제 50 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31 조 및 대마관리법 제 12 조의 3"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 40 조"로 한다.</p> <p>제 2 조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 2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p> <p>제 4 조중 "마약법 제 50 조제 4 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31 조제 4 항 및 대마관리법 제 12 조의 3 제 4 항"을 "법 제 40 조제 4 항"으로 한다. 제 13 조중 "마약법 제 50 조제 2 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31 조제 2 항 및 대마관리법 제 12 조의 3 제 2 항"을 "법 제 40 조제 2 항"으로 한다.</p> <p>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또는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p>	<p>부 칙(부령제 160 호 2000.7.1)</p> <p>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 시행한다</p> <p>제 2 조 (다른 법령의 폐지) 마약법시행규칙·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및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p> <p>제 3 조 (허가증등의 재교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률 제 6146 호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부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로 보는 자에 대하여 해당허가관청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지정서등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감시원증·향정신성의약품감시원증 또는 대마감시원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발급관청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p> <p>제 4 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 5 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0년 7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제 6 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마약법시행규칙,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또는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醫藥品製造品目的許可를 받은 者는 第18條第2項·第21條第2項 또는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第4條(麻藥類中毒者의 治療保護機關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從前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治療保護機關으로 지정받은 者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機關으로, 食品醫藥品安全廳長·特別市·廣域市·도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治療保護審査委員會는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保護審査委員會로 본다.</p> <p>第5條(麻藥類 名譽指導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從前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된 麻藥 名譽指導員·向精神性醫藥品 名譽指導員 또는 大麻 名譽指導員은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 名譽指導員으로 본다.</p> <p>第6條(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附則 第3條 내지 第5條에 規定된 사항외에 從前法律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免許·許可 그밖의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第7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從前法律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從前法律에 의한다.</p> <p>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麻藥類不法去來防止에 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1條중 "麻藥法·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大麻管理法"을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로 한다.</p> <p>第2條第1項중 "麻藥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麻藥,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管理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麻"를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麻藥, 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p>	<p>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2001.1.27 대령 17110 호]</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5 조제 1 항제 8 호 내지 제 20 호의 2 를 각각 삭제한다.</p> <p>부 칙 [2001.12.19 대령 17431 호]</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2003.7.30 대령 18078 호]</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부령제 263 호 2003.11.17)</p> <p>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마약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마약류(제제를 제외한다)의 양도승인을 얻은자는 제 18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 3 조(기록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은 제 21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한 마약류관리대장으로 본다.</p> <p>제 4 조(마약류·한외마약 등의 표시기재하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는 제 30 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이 규칙 시행당시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어 시중에 유통중인 “텍스트로메토르판 함유제제” 및 “카리소프 로돌 함유제제”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제 3 항 및 별표 6 의 개정규정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의약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 30 조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p> <p>제 5 조(수출입·제조품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수출입·제조품목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 32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 6 조(원료물질 수출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원료물질의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원료</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및 同條第 5 號의 規定에 의한 大麻로 하고, 同條第 2 項第 2 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第 3 號 및 第 4 號를 각각 削除하고, 同條第 3 項중 "麻藥法 第 62 條第 1 項第 2 號(未遂犯을 포함한다),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第 43 條第 1 項第 2 號 또는 大麻管理法 第 20 條第 1 項第 4 號(未遂犯을 포함한다)"를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 60 條第 1 項第 2 號 또는 第 61 條第 1 項第 3 號(未遂犯을 포함한다)"로 한다.</p> <p>2.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 58 條 내지 第 61 條의 罪第 6 條第 1 項第 1 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 2 號 및 第 3 號를 각각 削除한다.</p> <p>1.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 58 條(第 4 項을 제외한다), 第 59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同條第 1 項第 1 號 내지 第 5 號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同項第 5 號중 向精神性醫藥品을 제외한다) 또는 第 60 條第 1 項第 1 號(常習犯 및 未遂犯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第 6 條第 2 項第 1 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項第 2 號를 削除한다.</p> <p>1.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 59 條第 1 項 내지 第 3 項(同條第 1 項第 5 號 내지 第 12 號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同項第 5 號중 麻藥을 제외한다) 또는 第 60 條第 1 項第 3 號(未遂犯 및 常習犯을 포함한다)·第 4 號(未遂犯 및 常習犯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第 33 條第 1 項중 "麻藥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大麻管理法"을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로 한다.</p> <p>②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1 條중 "麻藥法"을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로 한다. 第 11 條第 1 項중 "麻藥法 第 60 條에"를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 58 條중 麻藥과 관련된"으로 하고, 同條第 2 項중 "麻藥法 第 61 條·第 62 條에"를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 第 59 條·第 60 條중 麻藥과 관련된"으로 한다.</p> <p>③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 2 條第 4 號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4) 및 (5)</p>		<p>물질은 제 48 조제 3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수출입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선적된 원료물질은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20 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 7 조(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를 각각 削除한다.</p> <p>(3)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麻藥類</p> <p>④通信秘密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 5 條第 1 項第 6 號중 "麻藥法"을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로 하고, 同條同項第 7 號 및 第 8 號를 각각 削除한다.</p> <p>⑤保健環境研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 5 條第 1 項第 2 號중 "麻藥法에 의한 麻藥,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 大麻管理法에 의한 大麻"를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에 의한 麻藥類"로 한다.</p> <p>⑥有害化學物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第 3 條第 3 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 4 號를 削除한다.</p> <p>3. 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에 의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p> <p>第 9 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從前法律 또는 그 條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같음하여 이 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의 條項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02.12.26 法 6824)</p> <p>제 1 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조제 6 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마약류 양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 양도에 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제 9 조제 3 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제 3 조(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p> <p>제 4 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麻藥類管理에 관한法律(04.01.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03.07.30)</p>	<p>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시행규칙(03.11.17)</p>
<p>부칙(2004.01.20 法 7098 號)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시행령(대령)

[별표 1](개정 2001. 1.27)

법 제 2 조제 2 호 나목에 해당하는 마약(제 2 조제 1 항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순번	품명	화학명
1	아세트르핀(Acetorphine)	3-O-acetyltetrahydro-7 α -(1-hydroxy-1-methylbutyl)-6,14-endoetheno-orphavine 또는 O-3-acetyl-7,8-dihydro-7 α -[1(R)-hydroxy-1-methylbutyl]-O6-methyl-6,14-endoethenomorphine 또는 6,7,8,14-tetrahydro-7 α -(1-hydroxy-1-methylbutyl)-6,14-endo-etheno-orphavine-3-acetate 또는 5-acetoxy-1,2,3,3a,8,9-hexahydro-2 α -[1(R)-hydroxy-1-methylbutyl]-3-methoxy-12-methyl-3,9a-etheno-9,9b-iminoethanophenanthro[4,5-bcd]furan
2	벤질모르핀(Benzylmorphine)	3-Benzylmorphine
3	코카인(Cocaine)	Methyl ester of benzoylecgonine
4	코독심(Codoxime)	Dihydrocodeinone-6-carboxymethyloxime
5	데소모르핀(Desomorphine)	Dihydrodeoxymorphine4,5-epoxy-3-hydroxy-N-methylmorphinan
6	디히드로모르핀(Dihydromorphine)	
7	에크고닌(Ecgonine)	
8	에토르핀(Etorphine)	Tetrahydro-7 α -(1-hydroxy-1-methylbutyl)-6,14-endoetheno-orphavine 또는 7,8-dihydro-7 α -[1(R)-hydroxy-1-methyl-butyl]-O6-methyl-6,14-endoetheno-morphine 또는 1,2,3,3a,8,9-hexahydro-5-hydroxy-2 α [1(R)-hydroxy-1methylbutyl]-3-methoxy-12-methyl-3,9a-etheno-

순번	품명	화학명
		9,9b-imino-etha-nophenanthro-[4,5-bcd]-furan
9	헤로인(Heroin)	Diacetylmorphine
10	히드로코돈(Hydrocodone)	Dihydrocodeinone
11	히드로모르피놀(Hydromorphinol)	14-Hydroxydihydromorphine
12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Dihydromorphinone
13	메칠데소르핀(Methyl-desorphine)	6-methyl-delta-6-deoxymorphine
14	메칠디히드로모르핀(Methyl-dihydromorphine)	6-methyldihydromorphine
15	메토폰(Metopon)	5-methyldihydromorphinone
16	모르핀(Morphine)	
17	모르핀-엔-옥사이드(Morphine-N-Oxide)	
18	미로핀(Myrophine)	Myristylbenzylmorphine
19	니코디코딘(Nicodicodine)	6-nicotinyldihydrocodeine 또는 Dihydroco-deine-6-nicotinate
20	니코모르핀(Nicomorphine)	3,6-dinicotinylmorphine 또는 Morphine dinicotinate
21	노르모르핀(Normorphine)	Demethylmorphine 또는 N-demethylated morphine
22	옥시코돈(Oxycodone)	14-hydroxydihydromorphinone 또는 Dihydroxy-codeinone
23	옥시모르폰(Oxymorphone)	14-hydroxydihydromorphinone 또는 Dihydro-14-hydroxymorphinone
24	테바콘(Thebacon)	Acetyldihydrocodeinone 또는 Acetyldemethylodihydrothebaine

순번	품명	화학명
25	테바인(Thebaine)	
26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 (Acetyl dihydrocodeine)	
27	코데인(Codeine)	3-Methylmorphine
28	디히드로코데인 (Dihydrocodeine)	
29	에칠모르핀(Ethylmorphine)	3-Ethylmorphine
30	니코코딘(Nicocodine)	6-nicotinylcodeine 또는 6-(pyridine-3-carboxylic acid)-codeine ester
31	노르코데인(Norcodeine)	N-demethylcodeine
32	폴코딘(Pholcodine)	Morpholinylethylmorphine 또는 β -4-morpholinylethylmorphine
33	모르핀 메소프로마이드 및 코데인-엔-옥사이드의 하나인 특히 모르핀-엔-옥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기타 5 원자가 니트르겐 모르핀 유도체	
34	디히드로에트르핀 (Dihydroetorphine)	

[별표 2](개정 2001. 1.27)

법 제 2 조제 2 호 다목에 해당하는 마약(제 2 조제 2 항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류로 한다

번호	품명	화학명
1	아세틸메사돌 (Acetylmethadol)	3-acetoxy-6-dimethylamino-4,4-diphenyl-heptane
2	알릴프로딘(Allylprodine)	3-allyl-1-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3	알파세틸메사돌 (Alphacetylmethadol)	Alpha-3-acetoxy-6-dimethylamino-4,4-diphenylheptane
4	알파메프로딘 (Alphameprodine)	Alpha-3-ethyl-1-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5	알파메사돌(Alphamethadol)	Alpha-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6	알파프로딘(Alphaprodine)	Alpha-1,3-di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7	아닐레리딘(Anileridine)	1-para-aminophen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1-[2-(p-aminophenyl)-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8	벤제치딘(Benzethidine)	1-(2-benzoyloxy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9	베타세틸메사돌(Betacetylmethadol)	Beta-3-acetoxy-6-dimethylamino-4,4-diphenylheptane
10	베타메프로딘 (Betameprodine)	Beta-3-ethyl-1-methyl-4-propionoxypiperidine
11	베타메사돌(Bethamethadol)	Beta-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12	베타프로딘(Betaprodine)	Beta-1,3-di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13	베지트라미드 (Bezitramide)	1-(3-cyano-3,3-diphenylpropyl)-4-(2-oxo-3-propionyl-1-benzimidazoliny)-piperidine
14	클로니타진(Clonitazene)	(2-para-chlorobenzyl)-1-diethylaminoethyl-5-nitrobenzimidazole

번호	품명	화학명
15	텍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4-[2-methyl-4-oxo-3,3-diphenyl-4-(1-pyrrolidinyl)butyl]morpholine 또는 d-3-methyl-2,2-diphenyl-4-morpholinobutyryl-pyrrolidine
16	디아프로미드 (Diampromide)	N-[2-(methylphenethylamino)-propyl]propionanilide
17	디에칠치암부텐 (Dirthylthiambutene)	3-diethylamino-1,1-di-(2'thienyl)-1-butene
18	디메녹사돌(Dimnoxadol)	2-dimethylaminoethyl-1-ethoxy-1,1-diphenylacetate 또는 2-dimethylaminoethyl ethoxydiphenylacetate 또는 Dimethylaminoethyldiphenyl-α-ethoxy-acetate
19	디메페프타놀 (Dimepheptanol)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l
20	디메칠치암부텐 (Dimethylthiambutene)	3-dimethylamino-1,1-di-(2'-thienyl)-1-butene
21	디옥사페틸부티레이트 (Dioxaphetyl butyrate)	Ethyl-4-morpholino-2,2-diphenylbutyrate
22	디펜옥시레이트 (Diphenoxylate)	1-(3-cyano-3,3-diphenylprop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2,2-diphenyl-4-(4-carbethoxy-4-phenylpiperidino)butyronitrile
23	디피파논(Dipipanone)	4,4-diphenyl-6-piperidine-3-heptanone
24	에칠메칠치암부텐 (Ethylmethylthiambutene)	3-ethylmethylamino-1,1-di-(2'thienyl)-1-butene
25	에토니타젠(Etonitazene)	1-diethylaminoethyl-2-para-ethoxybenzyl-5-nitrobenzimidazole
26	에톡세리딘(Etoxeridine)	1-[2-(2-hydroxyethoxy)-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27	펜타닐(Fentanyl)	1-phenethyl-4-N-propionylanilinopiperidine
28	푸레치딘(Furethidine)	1-(2-tetrahydrofurfuryloxy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29	히드록시페치딘	4-meta-hydroxyphenyl-1-methylpiperidine-4-

번호	품명	화학명
	(Hydroxypethidine)	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1-methyl- 4-(3-hydroxyphenyl)-piperidine-4- carboxylic acid ethyl ester
30	이소메사돈 (Isomethadone)	6-dimethylamino-5-methyl-4,4-diphenyl-3-hexanone
31	케토베미돈 (Ketobemidone)	4- <i>meta</i> -hydroxyphenyl-1-methyl-4-propionylpiperidine 또는 4-(<i>m</i> -hydroxyphenyl)-1-methyl-4- piperidyl ethyl ketone 또는 1-methyl-4- <i>meta</i> hydroxyphenyl-4-propionyl-piperidine
32	레보메소르판 (Levomethorphan)	(-)-3-methoxy- <i>N</i> -methylmorphinan
33	레보모라미드 (Levomoramide)	(-)-4-[2-methyl-4-oxo-3,3-diphenyl-4-(1-pyrrolidiny)butyl] morpholine 또는 <i>l</i> -3-methyl-2,2- diphenyl-4-morpholino-butylpyrrolidine
34	레보페나실모르판 (Levophenacymorphan)	(-)-3-hydroxy- <i>N</i> -phenacymorphinan
35	레보르파놀 (Levorphanol)	(-)-3-hydroxy- <i>N</i> -methylmorphinan
36	메타조신 (Methazocine)	2'-hydroxy-2,5,9-trimethyl-6,7-benzomorphan 또는 1,2,3,4,5,6-hexahydro-8-hydroxy-3,6,11-trimethyl-2,6-methano-3-benzazocine
37	메사돈 (Methadone)	6-dimethylamino-4,4-diphenyl-3-heptanone
38	메사돈 제조중간체 (Methadone Intermediate)	4-cyano-2-dimethylamino-4,4-diphenylbutane 또는 2-dimethylamino-4,4-diphenyl-4-cyanobutane
39	모라미드 제조중간체 (Moramide Intermediate)	2-methyl-3-morpholino-1,1-diphenylpropane carboxylic acid 또는 1,1-diphenyl-2-methyl-3-morpholino-propanecarboxylic acid
40	모르페리딘 (Morpheridine)	1-(2-morpholino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41	노라시메사돌 (Noracymethadol)	(±)- <i>alpha</i> -3-acetoxy-6-methylamino-4,4-diphenyl-heptane
42	노르레보르파놀 (Nor levorphanol)	(-)-3-hydroxymorphinan

번호	품명	화학명
43	노르메사돈 (Normethadone)	6-dimethylamino-4,4-diphenyl-3-hexanone 또는 1,1-diphenyl-1-dimethylamino-ethyl-2-butanone 또는 1-dimethylamino-3,3,- diphenyl-hexanone(4)
44	노르피파논 (Norpipanone)	4,4-diphenyl-6-piperidino-3-hexanone
45	페치딘 (Pethidine)	1-m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46	페치딘제조중간체에이 (Pethidine Intermediate A)	4-cyano-1-methyl-4-phenylpiperidine 또는 1-methyl-4-phenyl-4-cyanopiperidine
47	페치딘제조중간체비 (Pethidine Intermediate B)	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ester 또는 Ethyl-4-phenyl-4-piperidine carboxylate
48	페치딘 제조중간체 씨 (Pethidine Intermediate C)	1-m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49	페나독손 (Phenadoxone)	6-morpholino-4,4-diphenyl-3-heptanone
50	페남프로미드 (Phenampramide)	<i>N</i> -(1-methyl-2-piperidinoethyl)propionanilide 또는 <i>N</i> -[2-(1-methylpiperid-2-yl)ethyl]propionanilide
51	페나조신 (Phenazocine)	2'-hydroxy-5,9-dimethyl-2-phenethyl-6,7-benzomorphan 또는 1,2,3,4,5,6-hexahydro-8-hydroxy-6,11-dimethyl-3-phenethyl-2,6-methano-3-benzazocine
52	페노모르판 (Phenomorphane)	3-hydroxy- <i>N</i> -phenethylmorphinan
53	페노페리딘 (Phenoperidine)	1-(3-hydroxy-3-phenylprop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또는 1-phenyl-3-(4-carbethoxy-4-phenylpiperidine)-propanol
54	피미노딘 (Piminodine)	4-phenyl-1-(3-phenylaminopropyl)-piperidine-4-carboxylic acid ethyl ester
55	피리트라미드 (Piritramide)	1-(3-cyano-3,3-diphenylpropyl)-4-(1-piperidino)-piperidine-4-carboxylic acid amide 또는 2,2-diphenyl-4-[1-(4-carbamoyl-4- piperidino)]butyronitrile
56	프로헵타진 (Proheptazine)	1,3-dimethyl-4-phenyl-4-propionoxyazacycloheptane 또는 1,3-dimethyl-4-phenyl-4-propionoxy-hexamethyleneimine
57	프로페리딘 (Properidine)	1-methyl-4-phenylpiperidine-4-carboxylic acid isopropyl ester

번호	품명	화학명
58	라세메소르판 (Racemethorphan)	(±)-3-methoxy- <i>N</i> -methylmorphinan
59	라세모라마이드 (Racemoramide)	(±)-4-[2-methyl-4-oxo-3,3-diphenyl-4-(1-pyrrolidinyl)butyl]morpholine 또는 dl-3-methyl-2,2-diphenyl-4-morpholinobutyryl- pyrrolidine
60	라세모르판(Pacemorphan)	(±)-3-hydroxy- <i>N</i> -methylmorphinan
61	트리메페리딘 (Trimeperidine)	1,2,5-trimethyl-4-phenyl-4-propionoxypiperidine
62	프로피람(Propiram)	<i>N</i> -(1-methyl-2-piperidinoethyl)- <i>N</i> -2-Pyridylpropionamide
63	드로테바놀(Drotebanol)	3,4-dimethoxy-17-methylmorphinan-6β,14-diol
64	디펜옥신(Difenoxin)	1-(3-cyano-3,3-diphenylpropyl)-4-phenyl-isonipecotic acid
65	알펜타닐(Alfentanil)	<i>N</i> [1-(2-(4-ethyl-4,5-dihydro-5-oxo-1 <i>H</i> -tetrazol-1-yl)ethyl)-4-(methoxymethyl)-4-piperidinyl]- <i>N</i> -phenylpropanamide
66	티리딘(Tilidine)	(±)-ethyl- <i>trans</i> -2-(dimethylamino)-1-phenyl-3-cyclohexene-1-carboxylate
67	프로폭시펜(Propoxyphene)	(±)-1,2-diphenyl-2-propionoxy-3-methyl-4-dimethyl amine
68	아세틸-알파-메칠펜타닐 (Acetyl- <i>alpha</i> -methylfentanyl)	<i>N</i> [1-(<i>α</i> -methylphenethyl)-4-piperidyl]Acetanilide
69	알파-메칠펜타닐(<i>Alpha</i> -methylfentanyl)	<i>N</i> [1-(<i>α</i> -methylphenethyl)-4-piperidyl]propionanilide
70	3-메칠펜타닐(3-Methylfentanyl)	<i>N</i> -(3-methyl-1-phenethyl-4-piperidyl)Propionanilide
71	서펜타닐(Sufentanil)	<i>N</i> [4-(methoxymethyl)-1-[2-(2-thienyl-ethyl)-4-piperidyl]-propionanilide
72	피이피에이피(PEPAP)	1-Phenethyl-4-phenyl-4-piperidinol acetate
73	엠펙피피(MPPP)	1-Methyl-4-phenyl-4-piperidinol propionate
74	레미펜타닐(Remifentanyl)	

[별표 3](개정 2001.12.19)

법 제 2 조제 4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 2 조제 3 항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명	화학명
1	4-브로모-2,5-디메톡시 암페타민 (4-bromo-2,5-dimethoxyamphetamine)	4-bromo-2,5-dimethoxy- α -methylphenethylamine
2	2,5-디메톡시암페타민(2,5-dimethoxyamphetamine)	2,5-DMA
3	4-메톡시암페타민(4-methoxyamphetamine)	PMA
4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	5-methoxy-3,4-methylenedioxyamphetamine
5	4-메틸-2,5-디메톡시암페타민(4-methyl-2,5-dimethoxyamphetamine)	STP DOM
6	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3,4-methylenedioxyamphetamine)	
7	3,4,5-트리메톡시암페타민(3,4,5-trimethoxyamphetamine)	
8	부포테닌(Bufotenine)	5-hydroxy-N,N-dimethyltryptamine
9	디에틸트립타민 (Diethyltryptamine)	DET
10	디메틸트립타민 (Dimethyltryptamine)	DMT
11	디엠에이취피(DMHP)	3-(1-(2-dimethylheptyl)-hydroxy-7,8,9,10-tetrahydro-6,6,9-trimethyl-6H-dibenzo[b,d]pyran
12	엔-에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N-ethyl-3-piperidyl benzilate)	
13	이보게인(Ibogaine)	7-ethyl-6,6 β ,7,8,9,10,12,13-octahydro-2-methoxy-6,9-methano-5H-pyrindo[1',2':1,2]azepino[5,4-b]indole
14	엘에스디(LSD)엘에스디-25(LSD-25)	Lysergic acid diethylamide
15	메스카린(Mescaline)	3,4,5-trimethoxyphenethylamine
16	엔-메칠-3-피페리딜 벤질레이트	

번호	품명	화학명
	(N-methyl-3-piperidylbenzilate)	
17	파라헥실(Parahexyl)	3-hexyl-1-hydroxy-7,8,9,10-tetrahydro-6,6,9-trimethyl-6H-dibenzo[b,d]pyran
18	페이오프(Peyote)	
19	싸이로시빈(Psilocybin)	o-phosphoryl-4-hydroxy-N,N-dimethyltryptamine
20	싸이로신(Psilocyn)	4-hydroxy-N,N-dimethyltryptamine
21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티씨피, 피에취피, 피시어)[(Phencyclidine analogues(TCP, PHP, PCE, etc)]	TCP ; 1-[1-(2-thienyl)cyclohexyl]piperidinePHP ; PCPY ; 1-(1-phenylcyclohexyl)pyrrolidine PCE ; N-ethyl-1-phenylcyclohexylamine
22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2-(methylamino)-1-phenylpropan-1-one
23	에트립타민(Etryptamine)	3-(2-aminobutyl)indole
24	4-엠티에이(4-MTA)	α -methyl-4-methylthiophenethylamine

[별표 4](개정 2001.12.19)

법 제 2 조제 4 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 2 조제 3 항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명	화학명
1	암페타민(Amphetamine)	(±)-2-amino-1-phenylpropane
2	덱스암페타민(Dexamphetamine)	(+)-2-amino-1-phenylpropane
3	레브암페타민(Levamphetamine)	(-)-2-amino-1-phenylpropane
4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2-methylamino-1-phenylpropane
5	하이드록시암페타민 (Hydroxyamphetamine)	dℓ- ρ -hydroxy- α -methylphenethylamine
6	메칠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methyl-2-phenyl-2-(2-piperidyl)acetate
7	펜메트라진(Phenmetrazine)	3-methyl-2-phenylmorpholine
8	메크로콰론(Mecloqualone)	2-methyl-3-(2-chlorophenyl)-4(3H)-quinazolinone
9	메타콰론(Metaqualone)	2-methyl-3- o -tolyl-4(3H)-quinazolinone
10	펜사이크리딘(Phencyclidine)	1-(1-phenylcyclohexyl)piperidine
11	펜프로포렉스(Fenproporex)	N-2-Cyanoethylamphetamine
12	케치논(Cathinone)	(-)- α -aminopropiophenone
13	2,5-디메톡시-4-에칠-암페타민	DOET dℓ-2,5-dimethoxy-4-ethyl- α - imethylphenylethylamine
14	엠디엠에이(MDMA)	dℓ-3,4-methylenedioxy-N, α -dimethylphenylethylamine
15	페네틸린(Fenethyline)	dℓ-3,7-dihydro-1,3-dimethyl-7-(2-[(1-methyl-2-phenylethyl)amino]ethyl)-1H-purine -2,6-dione
16	엔-에칠-암페타민	dℓ-N-ethyl- α -methylphenylethylamine
17	펜캄핀(Fencamfamin)	dℓ-N-ethyl-3-phenylbicyclo(2,2,1)-heptan-2-amine
18	벤즈페타민(Benzphetamine)	N-benzyl-N, α -dimethylphenethylamine
19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20	지페프롤(Zipeprol)	α -(α -methoxybenzyl)-4-(β -methoxyphenethyl)-1-piperazineethanol
21	2 씨-비(2C-B)	4-bromo-2,5-dimethoxyphenethylamine

[별표 5]

법 제 2 조제 4 호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 2 조제 3 항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다만, 바르비탈산 유도체와 치오바르비탈산 유도체 및 이의 분자화합물을 포함한다.

번호	품명	화학명
1	아로바르비탈(Allobarbitol)	5,5-diallylbarbituric acid
2	알페날(Alphenal)	
3	아모바르비탈(Amobarbitol)	5-ethyl-5-(3-methylbutyl) barbituric acid
4	아프로바르비탈 (Aprobarbitol)	
5	바르비탈 (Barbital)	5,5-diethylbarbituric acid
6	부라로바르비탈 (Brallobarbitol)	
7	섹부타바르비탈 (Secbutabarbitol)	5-sec-butyl-5-ethylbarbituric acid
8	부탈비탈 (Butalbitol)	5-allyl-5-isobutylbarbituric acid
9	부타리로날 (Butallylonal)	
10	부토바르비탈 (Butobarbitol)	5-butyl-5-ethylbarbituric acid
11	싸이크로바르비탈 Cyclobarbitol)	5-(1-cyclohexene-1-yl)-5-ethylbarbituric acid
12	싸이크로펜토바르비탈 (Cyclopentobarbitol)	
13	엔아릴푸로피말(Enallylpropymal)	
14	에트아로바르비탈 (Ethallobarbitol)	
15	헵타바르비탈 (Heptabarbitol)	
16	헵토바르비탈 (Heptobarbitol)	
17	헥세탈 (Hexethal)	
18	헥소바르비탈 (Hexobarbitol)	
19	메타아비탈 (Metharbitol)	
20	메토헥시탈 (Methohexital)	
21	메칠페노바르비탈 (Methylphenobarbitol)	5-ethyl-1-methyl-5-phenylbarbituric acid
22	나아코바르비탈(Narcobarbitol)	
23	네알바르비탈 (Nealbarbitol)	

번호	품명	화학명
24	펜토바르비탈 (Pentobarbitol)	5-ethyl-5-(1-methylbutyl)barbituric acid
25	페노바르비탈 (Phenobarbitol)	5-ethyl-5-phenylbarbituric acid
26	페타아비탈 (Phetharbitol)	
27	프로바르비탈 (Probarbitol)	
28	프로파리로날 (Propallylonal)	
29	프로펠바르비탈 (Propylbarbitol)	
30	스피로치오바르비탈 (Spirothionbarbitol)	
31	테트라바르비탈 (Tetrabarbitol)	
32	치오펜탈(Thiopental)	
33	빈바르비탈(Vinbarbitol)	
34	바로타륨(Barotalum)	
35	디베랄(Diberal)	
36	도르모비트(Dormovit)	
37	이도부탈(Idobutal)	
38	레포살(Reposal, chlordiazepoxide)	7-chloro-2-(methylamino)-5-phenyl-3H-1,4-benzodiazepine-4-oxide
39	비닐비탈(Vinylbitol)	5-(1-methylbutyl)-5-vinylbarbituric acid
40	카르부바르비탈(Carbubarbitol)	
41	시그모달(Sigmodal)	
42	펜테날(Pentalen)	
43	엘도랄(Eldoral)	
44	치아미랄(Thiamylal)	
45	크로르헥사돌(Chlorhexadol)	(2-methyl-4-(2,2,2-trichloro-1-hydroxy ethoxy)-2-pentanol)
46	구루테치미드(Glutethimide)	2-ethyl-2-phenylglutarimide
47	리저직산(Lysergic acid)	9,10-didehydro-6-methylergoline-8β-carboxylic acid
48	리저직산 아마이드(Lysergic acid amide)	9,10-didehydro-6-methylergoline-8β-carboxamide
49	메프로바메이트 (Meprobamate)	2-methyl-2-propyl-1,3-propanediol dicarbamate
50	메치푸리론 (Methyprylon)	3,3-diethyl-5-methyl-2,4-piperidinedione

번호	품명	화학명
51	셀폰디에틸메탄 (Sulfondiethylmethane)	
52	셀폰에틸메탄(Sulfonethylmethane)	2,2-bis(ethylsulfonyl)butane
53	셀폰메탄(Sulfonmethane)	2,2-bis(ethylsulfonyl)propane
54	펜타조신(Pentazocine)	1,2,3,4,5,6, -hexahydro-6,11-dimethyl-3-(3-methyl-2-butanyl)-2,6-methano-3-benzocine-8-ol
55	아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Allylisopropylacetylurea)	Apronalide(2-isopropyl-4-pentenoyl)urea
56	브롬디에틸아세틸우레아 (Bromdiethylacetylurea)	Carbromal (α-bromo-α-ethylbutyryl)urea
57	브롬바레틸우레아 (Bromvalerylurea)	Bromisoval (α-bromoisovaleryl)urea
58	부프레노르핀(Buprenorpine)	21-cyclopropyl-7-α-[(S)-1-hydroxy-1,2,2-trimethylpropyl]-6,14-endo-ethano-6,7,8,14-tetrahydrooripavine
59	에프타조신(Eptazocine)	(1s)-1,4-dimethyl-10-hydroxy-2,3,4,5,6,hexahydro-1,6-methano-1H-4-benzazocine
60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5-(o-fluorophenyl)-1,3-dihydro-1-methyl-7-nitro-2H-1,4-benzodiazepine-2-one

[별표 6](개정 2001.12.19, 2003. 7.30))

법 제 2 조제 4 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 2 조제 3 항관련)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번호	품명	화학명
1	알프라졸람(Alprazolam)	8-chloro-1-methyl-6-phenyl-4H-1,2,4-triazolol[4,3-a][1,4]benzodiazepine
2	암페프라몬(Amfepramone)	2-(diethylamino)-1-phenyl-1-propanone
3	브로마제팜(Bromazepam)	7-bromo-1,3-dihydro-5-(2-pyridinyl)-2H-1,4-benzodiazepin-2-one
4	브로티졸람(Brotizolam)	2-bromo-4-(2-chlorophenyl)-9-methyl-6H-thieno[3,2-f]-[1,2,4]triazolo[4,3-a][1,4]diazepine
5	부토르파놀(Butorphanol)	Levo-N-cyclobutylmethyl-6,10 α , β -dihydroxy-1,2,3,9,10 α -hexahydro-(4H)-10,4 α -iminoethanophenanthrene
6	카마제팜(Camazepam)	7-chloro-1,3-dihydro-3-hydroxy-1-methyl-5-phenyl-2H-1,4-benzodiazepin-2-one dimethylcarbamate
7	케친(Cathine)	Norpseudoephedrined-threo-2-amino-1-hydroxy-1-phenylpropane(다만, 이성체인 Phenylpropanolamine 및 그 염은 제외한다.)
8	클로랄비테인(Chloral betaine)	
9	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	2,2,2-trichloro-1,1-ethanediol
10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Chlordiazepoxide)	7-chloro-2-methylamino-5-phenyl-3H-1,4-benzodiazepin-4-oxide
11	클로바잠(Clobasam)	7-chloro-1-methyl-5-phenyl-1H-1,5-benzodiazepine-2,4(3H,5H)-dione
12	클로나제팜(Clonazepam)	5-(0-chlorophenyl)-1,3-dihydro-7-nitro-2H-1,4-benzodiazepin-2-one
13	클로라제페이트(Clrazepate)	7-chloro-2,3-dihydro-2,2-dihydroxy-5-phenyl-1H-1,4-benzodiazepine-3-carboxylic acid
14	클로티아제팜(Clortiazepam)	5-0-chlorophenyl-7-ethyl-1,3-dihydro-1-methyl-2H-

번호	품명	화학명
		thieno[2,3-e]-1,4-diazepin-2-one
15	클록사졸람(Cloxazolam)	10-chloro-11b(0-chlorophenyl)-2,3,7,11b-tetrahydro-oxazolo-[3,2,-d][1,4]benzodiazepin-6(5H)-one
16	델로라제팜(Delorzepam)	7-chloro-5-(0-chl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17	디아제팜(Diazepam)	7-Chloro-1,3-dihydro-1-methyl-5-phenyl-2H-1,4-benzodiazepin-2-one
18	에스타졸람(Estazolam)	8-chloro-6-phen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19	에스크로비놀(Ethchlorvinol)	ethyl- β -chlorovinyl ethynyl carbinol
20	에치나메이트(Ethinamate)	1-ethynylcyclohexanol carbamate
21	에칠로프라제페이트(Ethyl Loflazepate)	Ethyl-7-chloro-5(0-fluorophenyl)2,3-dihydro-2-oxo-1H-1,4-benzodiazepine-3-carboxylate
22	에티졸람(Etizolam)	6-(5-chlorophenyl-8-ethyl-1-methyl-4H-S-triazolo[3,4-C]thieno[2,3-2][1,4]diazepine
23	펜플루라민(Fenfluramine)	N-ethyl- α -methyl-3-(trifluoromethyl)benzenethanamine
24	플루디아제팜(Fludiazepam)	7-Chloro-5-(2-fluorophenyl)-1-methyl-1H-1,4-benzodiazepin-2(3H)-one
25	플루라제팜(Flurazepam)	(7-chloro-1,2-(diethylamino)ethyl-5-(0-flu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26	할라제팜(Halazepam)	7-chloro-1,3-dihydro-5-phenyl-1-(2,2,2-trifluoroethyl)2H-1,4-benzodiazepin-2-one
27	할록사졸람(Haloxazolam)	10-bromo-11b-(0-fluorophenyl)-2,3,7,11b-tetrahydroxazolo[3,2-d][1,4]-benzodiazepin-6-(5H)-one
28	케타졸람(Ketazolam)	11-chloro-8,12b-dihydro-2,8-dimethyl-12b-phenyl-4H-[13-oxazino[3,2-d][1,4]benzodiazepine-4,7(6H)-dione
29	레페타민(Lefetamine)	SPA(-)-1-dimethylamino-1,2-diphenylethane
30	로프라졸람(Loprazolam)	6-(0-chlorophenyl-2,4-dihydro-2[(4-methyl-1-piperazinyl)methylene]-8-nitro-1H-imidazo[1,2-a][1,4]benzodiazepin-1-one
31	로라제팜(Lorzepam)	7-Chloro-5-(0-chlorophenyl)-1,3-dihydro-3-hydroxy-2H-1,4-benzodiazepin-2-one

번호	품명	화학명
32	로르메타제팜(Lormetazepam)	7-chloro-5-(o-chlorophenyl)-1,3-dihydro-3-hydroxy-1-methyl-2H-1,4-benzodiazepin-2-one
33	마진돌(Mazindol)	5-(p-chlorophenyl)-2,5-dihydro-3H-imidazo[2,1-a]isoindol-5-ol
34	메다제팜(Medazepam)	7-chloro-2,3-dihydro-1-methyl-5-phenyl-1H-1,4-benzodiazepine
35	메페노렉스(Mefenorex)	dl-N-(3-chloropropyl)-α-methylphenethylamine
36	미다졸람(Midazolam)	8-chloro-6-(2-fluorophenyl)-methyl-4H-imidazo[1,5-a](1,4) benzodiazepine
37	니메타제팜(Nimetazepam)	1,3-dihydro-1-methyl-7-nitro-5-phenyl-2H-1,4-benzodiazepin-2-one
38	니트라제팜(Nitrazepam)	1,3-dihydro-7-nitro-5-phenyl-2H-1,4-benzodiazepine-2-one
39	놀라제팜(별명 : 데메칠다이제팜)(Nordazepam)	7-chloro-1,3-dihydro-5-phenyl-1(2H)-1,4-benzodiazepine-2-one
40	옥사제팜(Oxazepam)	7-chloro-1,3-dihydro-3-hydroxy-5-phenyl-2H-1,4-benzodiazepine-2-one
41	옥사졸람(Oxazolam)	10-chloro-2,3,7,11b-tetrahydro-2-methyl-11b-phenyl oxazol[3,2-d][1,4]benzodiazepine-6-(5H)-one
42	옥시퍼어틴(Oxypertine)	5,6-dimethoxy-2-methyl-3-[2-(4-phenyl-1-piperazinyl)ethyl]-1H-indole
43	파르알데히드(Paraldehyde)	Paracetaldehyde
44	페몰린(Pemoline)	2-amino-5-phenyl-2-oxazolin-4-one 2-imino-5-phenyl-4-oxazolidinone
45	페트리클로랄(Petrichloral)	1,1-[2,2-bis(2,2,2-trichloro-1-hydroxy-ethoxy)methyl]-1,3-propanediyl bis(oxy) bis[2,2,2-trichloroethanol]
46	펜디메트라진(Phendimtrazine)	(+)-3,4-dimethyl-2-phenylmorpholine
47	펜터민(Phentermine)	α, α-dimethylphenethylamine
48	피나제팜(Pinazepam)	7-chloro-1,3-dihydro-5-phenyl-1-(2-propynyl)-2H-1,4-benzodiazepine-2-one
49	피프라드롤(알파또는감마)[Pipradrol(α, γ)]	1,1-diphenyl-1-(2-pipecidyl)-methanol
50	프라제팜(Prazepam)	7-chloro-1-(cyclopropylmethyl)-1,3-dihydro-5-phenyl-2H-

번호	품명	화학명									
		1,4-benzodiazepin-2-one									
51	프로필헥세드린(Propylhexedrine)	N, α-dimethylcyclohexaneethamine									
52	피리칠디온(Pyriethyldione)	3,3-diethyl-2,4-(1H,3H) pyridinedione									
53	피로발레론(Pyrovalerone)	1-(4-Methyl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54	테마제팜(Tamazepam)	7-chloro-2,3-dihydro-3-hydroxy-1-methyl-5-phenyl-1H-1,4-benzodiazepin-2-one									
55	테트라제팜(Tetrazepam)	7-chloro-5-(cyclohexen-1-yl)-1,3-dihydro-1-methyl-2H-1,4-benzodiazepin-2-one									
56	트리아졸람(Triazolam)	8-chloro-6-(o-chlorophenyl)-1-methyl-4H-s-triazolo[4,3-a][1,4] benzodiazepine									
57	조피클론(Zopiclone)	5-(4-methylpiperazine-1-yl)carbonyloxy-6-(5-chloro pyrid-2-yl)-7-oxo-5,6-dihydropyrrolo[3,4-b]pyrazine									
58	플루토프라제팜(Flutoprazepam)	7-chloro-1-(cyclopropylmethyl)-5-(2-flu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e-2-one									
59	멕사졸람(Mexazolam)	10-chloro-11b-(2-chlorophenyl)-2,3,7,11b-tetrahydro-3-methyloxazol[3,2-d][1,4]benzodiazepin-6(5H) one									
60	졸피뎀(Zolpidem)	(Methyl-4-phenyl)-2N,N,6-trimethylimidazo(1,2-a)pyridine-3-acetamide									
61	아미노렉스(Aminorex)	2-amino-5-phenyl-2-oxazoline									
62	메소카브(Mesocarb)	3-(α-methylphenethyl)-N-phenylcarbamoylsydnone imine									
63	날부핀(Nalbuphine)		64	지에이치비(GHB)	γ-hydroxybutyric acid	6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66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64	지에이치비(GHB)	γ-hydroxybutyric acid									
65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66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별표 7]

법 제 2 조제 4 호 마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제 2 조제 3 항관련)

[별표 3] 내지 [별표 6]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법 제 2 조제 4 호마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8](개정 2001.12.19, 2003.7.30)

~~제조등이 금지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 및 최저거래량 (제 4 조 및 제 19 조관련)~~

~~○ 마약류의 원료물질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최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시마다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원료물질 및 최대거래량(제 2 조제 4 항 및 제 19 조제 2 항 관련)

○ 원료물질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그 염류로 한다.

○ 최대거래량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은 거래시마다 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1 군)

번호	품명	최저거래량
1	에페드린(Ephedrine)	1 킬로그램
2	에르고메트린(Ergometrine)	10 킬로그램
3	에르고타민(Ergotamine)	20 킬로그램
4	리서직산(Lysergic acid)	
5	1-페닐-2-프로판논(1-phenyl-2-propanone)	1 킬로그램
6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40 킬로그램
7	엔-아세틸안트라닐릭산(N-acetyl-anthranilic acid)	
8	이소사프롤(Isosafrole)	
9	3,4-메틸렌디옥시페닐-2-프로판논(3,4-Methyl-enedioxy-phenyl-2-propanone)	20 킬로그램
10	피페로날(Piperonal)	
11	사프롤(Safrole)	

번호	품명	최저거래량
12	놀에페드린(Norephedrine)	
13	무수초산(Acetic anhydride)	1,000 킬로그램(3,800 리터)
14	아세톤(Acetone)	1,500 킬로그램(5,700 리터)
15	과망간산칼륨(Potassium Permanganate)	500 킬로그램(1,900 리터)

(2 군)

번호	품명	최저거래량
1 및 2	<삭제>	
3	안트라닐릭산(Anthranilic acid)	30 킬로그램
4	에칠에테르(Ethyl ether)	1,400 킬로그램(5,320 리터)
5	초산페닐(Phenylacetic acid)	1 킬로그램
6	피페리딘(Piperidine)	500 그램
7	염산(염류제외)(Hydrochloric acid)	
8	메칠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2-Buta-none)	1,460 킬로그램(5,500 리터)
9	<삭제>	
10	황산(염류제외)(Sulphuric acid)	
11	톨루엔(Toluene)	1,600 킬로그램(6,000 리터)

[별표 9]

과징금 산정기준(제 15 조관련)

1.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의

(단위 : 만원)

구분	업무정지 1 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당해 품목의 전년도 총생산(수입)금액
1	6	2,000 미만
2	12	2,000 이상 ~ 5,000 미만
3	18	5,000 이상 ~ 7,000 미만
4	24	7,000 이상 ~ 10,000 미만
5	30	10,000 이상 ~ 20,000 미만
6	36	20,000 이상 ~ 30,000 미만
7	42	30,000 이상 ~ 40,000 미만
8	48	40,000 이상 ~ 50,000 미만
9	54	50,000 이상 ~ 60,000 미만
10	60	60,000 이상 ~ 70,000 미만
11	66	70,000 이상 ~ 80,000 미만
12	72	80,000 이상 ~ 100,000 미만
13	78	100,000 이상 ~ 150,000 미만
14	84	150,000 이상 ~ 200,000 미만
15	90	200,000 이상

2. 마약류도매업자의 경우

- 업무정지 1 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5 만원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

- 업무정지 1 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 3 만원

비 고

1. 업무정지 1 월은 30 일을 기준으로 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 ·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가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품목의 1 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품목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처분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당해 품목의 1 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마약류취급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등으로 인하여 1 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규칙(부령)

[별표 1]

수수료(제 8 조제 7 항, 제 10 조제 2 항, 제 12 조제 2 항, 제 15 조제 3 항, 제 32 조제 3 항, 제 33 조제 2 항관련)

종 목	수수료
1. 마약류취급자 허가	10,000 원
2. 마약류관리자 지정	3,000 원
3.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3,000 원
4. 마약류취급자 변경지정	3,000 원
5. 허가증 또는 지정서 재교부	600 원
6. 마약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 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1) 신약	60,000 원
(2) 기타 의약품	40,000 원
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 원
7. 마약류 수입·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요하는 경우	35,000 원
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	5,000 원
8. 마약류수입허가 공인증명	1,000 원

[별표 2]

손실허용기준(제 40 조제 8 호관련)

1. 주사제는 3 퍼센트이하로 한다.
2. 액제류는 3 퍼센트이하로 한다.
3. 소분분말제인 경우 5 그램단위이상은 0.2 퍼센트이하, 1 그램단위는 0.4 퍼센트이하로 한다.
4. 당의정은 3 퍼센트이하로 한다.
5. 산제 및 과립제는 3 퍼센트이하로 한다.
6. 정제 및 캡셀제는 2 퍼센트이하로 한다.
7. 서방(徐放)정은 5 퍼센트이하로 한다.

8. 좌제는 4 퍼센트이하로 한다.

9. 패취(patch)제는 8 퍼센트이하로 한다.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 43 조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사항이 2 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의하되, 그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에 경한 처분의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2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연간 위반사항의 횟수가 3 차이상일 때에는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4. 1년이내에 3회이상 취급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5. 경고처분을 2년이내에 6 회이상 받을 경우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6.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3 월이상 6 월이하의 취급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이내에 3 월이상 6 월이하의 취급업무정지처분요건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다.
7.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중 정지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
8.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수입 또는 제제(제조를 포함한다)만 하고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9. 마약류취급자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의 위반사항이 개별기준 제 8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등을 통하여 그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까지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10. 행정처분기준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사법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차	2 차	3 차	4 차
1. 마약류취급자가 그 업무외의 목적을 위하여 법 제 4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법 제 5 조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지정 취소		
2. 마약류취급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 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 6 조 (시행규칙 제 12 조)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3. 마약류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 버렸거나 못쓰게 된 것을 안 날부터 20 일 이내에 재교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 7 조제 2 항(시행규칙 제 15 조)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4.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	법제 9 조제 2 항(시행규칙 제 18 조)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취소		
5.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류(제제를 제외하다)를 사·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양도한 때(개정 2003.11.17)	법제 9 조제 3 항(시행규칙 제 19 호)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취소	
6. 마약류취급자가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한 때	법제 10 조제 1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7. 마약류취급자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를 교환한 날부터 2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제 10 조제 2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차	2 차	3 차	4 차
8.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의 판매·수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또는 허위로 기재한 때	법제 11 조 (시행규칙 제 21 조)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지정 취소	
9.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마약류 마약의 재고량이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개정 2003.11.17)	법제 11 조 (시행규칙 제 21 조)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지정 취소	
9 의 2.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의약품의 재고량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신설 2003.11.17)	법 제 11 조(시행규칙 제 21 조)				
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 미만		경고	취급업무정지 7 일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나. 품목별 전월사용량의 0.2%이상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10.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아니한 때	법제 11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11.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관리대장등을 2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제 11 조제 4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12.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하는 마약에 대하여 법제 12 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보고기일이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법제 12 조 (시행규칙 제 23 조제 1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차	2 차	3 차	4 차			1 차	2 차	3 차	4 차
13. 마약류취급자가 변질·부패 또는 파손된 마약류를 사고보고 없이 취급한 때	법제 12 조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지정 취소		17. 마약류취급자가 봉합증지로 봉합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한 때	법제 16 조 제 2 항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취소		
14. 마약류취급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외에 광고를 하거나 시행규칙 제 25 조에서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한 때	법제 14 조 (시행규칙 제 25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18.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 또는 원료사용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의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제 17 조 (시행규칙 제 30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15. 마약류취급자가 마약을 다른 의약품의 저장장소와 구획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때	법제 15 조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19. 마약류수출입업자·제조업자 또는 원료사용자가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의마약을 수출입·제조한 때	법제 18 조 제 2 항·제 21 조 제 2 항·제 24 조 제 2 항	허가취소			
16. 마약류취급자가 마약을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외의 다른 시설에 보관한 때	법제 15 조 (시행규칙 제 26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20.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날부터 보고기일이내에 수출입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제 19 조 (시행규칙 제 35 조 제 1 항)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16 의 2. 마약류취급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때(신설 2003.11.17)	법 제 15 조(시행규칙 제 26 조)					2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수입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도매업자와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제 20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가. 법 제 2 조 제 4 호 가 목 내 지 다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나 법 제 2 조 제 4 호 라 목 및 마 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경고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차	2 차	3 차	4 차			1 차	2 차	3 차	4 차
22.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 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의마약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을허위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제 19 조·제 23 조 및 제 25 조(시행규칙제 35 조제 3 항)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26. 마약류도매업자가 마약을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취급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와의 자에게 허가관청의 승인없이 판매한 때	법제 26 조제 1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23.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향정신성의 약품을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외의 자에게 판매한 때	법제 22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27. 마약류도매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허가관청의 승인없이 판매한 때	법제 26 조제 2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24.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제제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생산완료일부터 보고기일 이내에 생산완료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제 23 조(시행규칙제 35 조제 2 항)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28. 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취급한 마약 또는 대마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기일 이내에 해당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법제 27 조·제 29 조 및 제 35 조제 2 항(시행규칙제 37 조)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25. 마약류원료사용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여 한의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한 때에 그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기일 이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때	법제 25 조(시행규칙제 36 조)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29.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때(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한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마약류를 직접 투여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때를 제외한다)	법제 32 조제 1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30.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허위기재를하거나 처방전을 2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제 32 조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차	2 차	3 차	4 차			1 차	2 차	3 차	4 차
31. 4 인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다)	법제 33 조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취소		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제품이 변질·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일반의약품과 별도로 분리하여 안전하게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 6 호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3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제 21 조의 규정에의한 기록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기록한 때 또는 2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법제 35 조제 2 항· 제 3 항· 4 항(시행규칙제 21 조 제 3 항)(개정 2003.11.17)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마. 마약·한외마약을 제조하는 경우에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					
33.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제조한 품목에 대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제 38 조					(1) 마약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20%미만 과부족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5 호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2)마약외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미만과 부족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5 호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3)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과부족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5 호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취소	
						(4)마약의 유효성분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미만 과부족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5 호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가. 제제소 및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1 호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제조소안에 둔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3 호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와 그제품에 대한 자가시험을 행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4 호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바. [별표 2]의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					
						(1) 정당한 사유없이 제제상 손실률이 허용범위보다 5%미만 초과한 때	시행규칙제 40 조제 5 호 제 8 호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 차	2 차	3 차	4 차
(2) 정당한 사유없이 제제상 손실률이 허용범위보다 5% 이상 초과한 때	시행규칙 제 40 조제 5 호제 8 호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허가취소	
33 의 2. 마약류취급자가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때(신설 2003.11.17)	법 제 38 조제 2 항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취급업무정지 6 월
33 의 3.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신설 2003.11.17)	법 제 38 조제 3 항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34. 마약류취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제 41 조	취급업무정지 3 월	허가취소		
35. 마약류취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제 50 조 (시행규칙 제 49 조)	경고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2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36. 기타 마약류취급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위반한 때	법제 44 조	취급업무정지 15 일	취급업무정지 1 월	취급업무정지 3 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정 대통령령제 13045 호 1990. 7. 6

개정 대통령령제 14446 호 1994. 12. 23

개정 대통령령제 15732 호 1998. 2. 28

대통령령제 16884 호 2000. 7. 1

대통령령제 16979 호 2000. 10. 13

제 1 조 (목적) 이 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지정,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7.1, 2000.10.13)

제 2 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

1.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법 제 2 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법 제 2 조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중독자"(이하 "중독자"라 한다)라 함은 마약류를 남용하여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지정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한다)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행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국립정신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2.28, 2000.10.13)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행하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공립병원 기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 다음의 시설 및 인원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0.13)

1. 판별검사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및 뇌파검사기
2. 정신과전문의 및 심리검사요원
3. 기타 중독자 치료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

③ 시·도지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제 4 조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 4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각각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12.23, 98.2.28, 2000.7.1, 2000.10.13)

제 5 조 (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0.10.13)

1. 중독자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 3 조제 1 항의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4. 중독자의 입·퇴원,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판별검사를 위한 입원조치에 관한 사항
2. 중독자의 입·퇴원 및 입원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3. 중독자 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7 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치료보호기관의 장(치료보호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정신과전문의 및 중독자의 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중앙위원회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방위원회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위원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각각 위촉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0.10.13)
- ③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각 위원회는 제 5 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각 위원회는 회의록(특정인의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에 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 ④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 (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중독자등의 통보 및 입원신청) ①검사는 중독자 또는 중독자로 의심되는 자(이하 "중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할 필요가 있거나 중독여부를 판별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3)

- ②교정시설(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감호소·소년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중독자 등을 석방할 때에는 당해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중독자 등 본인, 그의 배우자·직계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은 판별검사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0.13)
-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통보·입원의뢰 및 입원신청은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 (중독자등의 입원조치)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9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중독자 등의 통보·입원신청 또는 입원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인을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켜야 한다.(개정 2000.10.13)

-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중독자 등을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 등을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독자 등을 입원시킨 후에 지체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0.13)
- ③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독자 등을 입원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중독자 등의 배우자·직계존속·호주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입원의 일시·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고, 당해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3)

제 11 조 (판별검사의 기준등)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치료보

호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정신과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여 중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마약류를 병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2. 마약류의 사용이 사회적·직업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3. 마약류를 1월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4. 신체검사시의 육안으로 주사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금단증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6. 아편계열 사용시 날린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나타내는지의 여부
7. 혈액 및 소변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지의 여부
8. 정신과적 면담·언행관찰 및 심리검사 결과 잠재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지의 여부

제 12 조 (판별검사의 결과보고)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 결과를 7 일 이내에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0.10.13)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입원의뢰에 의하여 입원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검사에게도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하여 판별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3)

제 13 조 (치료보호명령) 법 제 4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판별검사결과 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해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7.1, 2000.10.13)

제 14 조 (중독자의 치료)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의 치유를 위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5 조 (중증중독자의 치료보호특례) ①2월이상 치료보호를 요하는 중증중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중독자를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 입원조치하여 치료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4.12.23, 98. 2.28, 2000.10.13)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치료보호기관의 병상규모, 의료인력 및 입원할 중증중독자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중증중독자를 치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조치를 당해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입원조치하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0.13)

제 16 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중독자가 치료보호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보호기간 종료 10 일 이전에 그 사유 및 연장기간을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②제 1 항의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각각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회 2 월의 범위안에서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보호기간은 통산하여 6 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23, 98.2.28)

제 17 조 (치료상황보고) ①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간 종료 10 일 이전에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독자의 치료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치료보호기간 종료전에 중독자가 완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98.2.28)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입원의뢰에 의하여 입원한 자

에 대하여는 치료보호기간 종료 10 일이전에 당해 검사에게도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0.13)

제 18 조 (퇴원조치)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2000.10.13)

1. 판별검사 결과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치료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3. 제 17 조제 1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
4. 검사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

②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4 호의 사유로 퇴원 조치된 자에 대하여 퇴원한 날부터 1 년간 치료를 받은 당해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일 마약류 재사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0.10.13)

제 19 조 (비용부담) 국가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마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0 조제 1 항중 "마약취급의료업자인 수용시설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을 "법 제 5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 2 항중 "수용시설의 장 및 지정기관의 장"을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 하며, "보건사회부장관에게"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로 한다. 제 21 조 내지 제 25 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 28 조제 2 항제 3 호중 "격리수용"을 "치료보호"로 한다. 별지 제 20 호서식중 "격리수용시설"을 각각 "치료보호기관"으로 하고, "시설의 장"을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 하며, "수용중인"을 "입원중인"으로 한다. 별지 제 21 호서식 및 별지 제 22 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를 삭제한다.

부 칙 (대령 14446 호 94·12·23)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 (대령 15732 호 98·2·28)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 (대령 16884 호 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 칙 (대령 16979 호 200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 관한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1997-43 호(1997. 7. 1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8-91 호(1998. 9.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1999-49 호(1999. 10. 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15 호(2000. 3.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28 호(2000. 7. 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0-45 호(2000. 9. 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2- 7 호(2002. 2. 18)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44 호(2003. 9. 26)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 3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 조제 1 항제 13 호 규정에 의거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제 1 조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3.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6. 염산페닐프로판아민 함유 단일제 및 식욕억제용 복합제
7. (삭 제)
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9. 타다라필 함유제제

10. 바데나필 함유제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조제 1 호 및 제 7 호의 개정규정은 200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법제 145 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 2000-33 호(2000.9.21)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 145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2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그 확인방법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3.5>

1. “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 출입물품에 대한 허가·승인·표시 기타조건을 확인·증명하는 수출입 관련기 관을 말한다.
2. “세관장확인”이라 함은 세관장이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수출입요 건 구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법 145 조 제 2 항에 의하여 통관시 세관장이 확 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 1 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 확인을 생 략한다.<개정 99.3.5><개정 2000.9.21>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 27 조에 의한 수출입승인면제물품. 다만, 다음 각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나. 식물방역법
 - 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라.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 마. 자연환경보전법
 - 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야.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함. 다 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대외무역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물품

제 4 조(확인요청) ①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구비 사실에 대하여 통관시 세관장에 게 확인을 요청 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 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5>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요건구비여부를 전 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 정 99.3.5>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요청내용·물품의 특 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5>

④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개정등으로 “별표 1” 과 “별표 2”에서 정한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개정 99.10.7>

제 5 조(확인방법)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수출입요건확인내역을 연계된 전산망을 통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5>

② 세관장은 통관시스템에 통보된 수출입요건확인내역을 조회하여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내용이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사항이거나 동일업 무에 대한 요건확인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단위까지 산재되어 전산망 연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요건확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99.10.7>

1. 외국환거래법
2.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4. 원자력법
-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6. 지방세법

③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전자문서는 이를 원본으로 인정한다. <개정 99.3.5>

제 6 조(통관자료 요청 및 제공) ① 요건확인기관의 장이 수출입요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관자료를 제공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대상물품·대상물품별 HSK 10 단위번호·요청 사유와 전산망 연계방법 및 연계시기를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3.5>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검토한후 통관자료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3.5>

③ 제 2 항에 의한 통관자료는 관세청과 전산망이 연계된 기관에 한하여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신설 99.3.5>

마약류 감시업무지침

1998.04.16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제 3 호

개정 2002.12.29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제 64 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 48 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감시원의 의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이하" 마약류" 라 한다)에 관한 감시(이하" 감시" 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약류감시원(이하" 감시원" 이라 한다)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조(감시범위)①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감시원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의 업무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감시원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 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2. 시·도 및 시·군·구 소속감시원

- 가. 마약류도매업자
- 나. 마약류소매업자
- 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라. 마약류관리자
- 마. 대마재배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업무대상구분에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시·도 관할에 관계없이 합동 또는 교체하여 감시를 할 수 있다

제 4 조(감시구분) ①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

②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정기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매년 수집·시달하는 마약류관리지침에 의하여 관내업소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수시감시는 특별한 정보의 입수,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 및 민원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관내업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 5 조(감시방법)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소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 6 조(감시사항)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에 대한 감시

- 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제조·수출입·운반·관리·매매·수수 등)준수 상태
- 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지정규정 준수상태
- 라. 마약류의 양도·양수규정 준수상태
- 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바. 마약류 기록의 정비규정 준수상태
- 사.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 아.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 자. 마약류의 봉합 규정 준수상태

- 차. 마약류의 용기 ·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 규정 준수상태
- 카. 마약류의 허가관리, 수출입 · 제조 · 판매 · 원료사용 등의 보고규정 의무 사항 준수상태
- 타. 마약류 원료 및 그 제품의 자가시험에 대한 기록작성 비치 등 준수상태
-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여부
- 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도매업자 · 마약류소매업자 및 마약류관리자에 대한 감시

- 가. 시설 및 기구의 적부
- 나. 마약류 취급규정(마약류 사용 · 조제 · 투약 · 운반 · 관리 · 수수 등) 준수상태
- 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 · 지정규정 준수상태
- 라. 마약류의 양도 · 양수규정 준수상태
- 마.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규정 준수상태
- 바. 사고마약류 처리규정 준수상태
- 사. 마약의 저장상태 규정 준수상태
- 아. 마약류 판매 및 그 보고규정 의무사항 준수상태
- 자. 마약류 투약의 기록규정 준수상태
- 차. 마약류 처방전의 기록 관리규정 준수상태
- 카. 마약류 기록의 정비 등 규정 준수상태
- 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 파.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 상태

3. 대마재배자에 대한 감시

- 가. 대마초재배자의 보고 및 폐기 규정 준수상태
- 나. 기타 법 규정사항 준수상태

4. 마약류 광고단속

- 가. 의학 또는 약학전문지 이외의 광고 여부
- 나. 기타 법 규정의 준수사항

5. 기타 법 규정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

제 7 조(점검표) ①당해업소에 대한 감시가 끝났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매년 수립 · 시달하는 마약류관리지침의 서식에 의한 점검표 2 부를 작성하여 1 부는 서명 날인한 후 당해 업소에 교부하고, 1 부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소교부용은 업소의 잘 보이는 곳에 보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동일업소를 재차 감시를 할 때에는 감시원은 미리 관서 보관용 점검표를 지참하고, 업소에 임하여 업소비치용 점검표와 함께 점검항목을 점검한 후 관계란에 기입 서명 날인하고 업소비치용은 입회자에게, 관서보관용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점검표는 관서보관용 및 업소비치용을 불문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조(보고) ①감시원은 감시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시를 행한 날의 다음날 오전 10:00 까지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이 계속되는 때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출장종료 후에 종합보고 할 수 있다.

②감시결과보고서는 6 하원칙에 의하여 정확 · 명료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물적입증자료(확인서, 진술서, 자인서, 기타증거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9 조(감시기록의 비치) 시 · 도 및 시 · 군 · 구 소속감시원은 일일 직무집행사항을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감시기록부에 기재하고 복명서와 같이 소속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감시결과 처리) 감시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관서가 상급관서일 때에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물적 증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세부시행세칙) 이 지침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마 약 류 감 시 기록부

				결 재

1. 일자
2. 지시사항
3. 업무계획
4. 조사내용
5. 처리의견
6. 비고

마약류감시원 직급 :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물수마약류 관리 지침

제정 1991.12.26 보건사회부 훈령제 630 호

개정 1998.04.16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제 5 호

개정 2001.03.05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제 66 호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3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1 조 · 제 2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 조 ·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물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물수마약류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물수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 · 제 4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물수품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 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수받거나 인수받아야 할 물수마약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물수마약류의 인계인수) ① 물수마약류는 시·도지사가 인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물수마약류는 수사기관의 물수물 인계공문에 의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수마약류의 인수시에는 포장된 용기를 봉인한 상태에서 중량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④ 중량 확인 결과 중량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인계자(봉인자)가 중량의 차이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후 인수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가 물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인계관서장 ○ 매건별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9 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물수마약류인계서와 포장용기에 봉합 · 봉인한 자의 소속 · 직급 ·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된 물수마약류를 인수하

여야 한다.

제 5 조(내용품의 확인 등) ① 물수마약류의 인수시 내용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계자와 인수자가 입회하여 개봉 확인한 후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다시 봉합 · 봉인하여야 하며, 물수마약류인계서에 제 4 조 제 5 항의 요령에 의해 봉인자가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물수마약류의 내용품확인시 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 입회하여 검체채취를 실시하고, 물수마약류와 검체를 인수자와 인계자가 제 1 항의 요령에 의하여 다시 봉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기관에서 검정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검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인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검체 검정결과 진품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검체채취를 실시할 때에는 채취과정을 촬영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보안유지) 물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 직원외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중 도난 유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무장경찰을 파견 요청하여 호송하는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 조(보관관리) ① 시·도지사는 인수한 물수마약류를 분실 · 도난 ·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책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안이나 전용보관창고 안에, 다른 장소로 용이하게 이송할 수 없고,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안과 밖으로 이중의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나 이중철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물수마약류를 인수할 때에는 관련담당을 보관책임자로, 실무자(6 급이하)를 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물수마약류의 보관 · 관리업무가 사무분장으로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는 사무분장으로 그 지정을 갈음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몰수마약류를 ○수할 때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51 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별지 제 1 호 서식의 몰수마약류처분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8 조(보관책임자) ①보관책임자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몰수마약류를 인수받았을 때에는 매건별 매포장 용기마다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보관 및 인수인계조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상급자(과장)의 입회 하에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처분대장을 최종정리한 다음, 인수자와 인계자가 대장의 내역과 현품을 대조 확인한 후 대장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매건별 포장용기별로 첨부된 몰수마약류보관 및 인수인계조서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폐기등) ①시·도지사는 인계기관(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몰수마약류중 검사로부터 사건종결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최단기간 내에 법 제 53 조제 2 항, 같은법 시행령 제 21 조·제 22 조의 규정에 의함 폐기 또는 분양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몰수마약류폐기목록을 작성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처분대장에 기록한 후 폐기하되 제 4 조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인계서와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보관 및 인수인계조서를 몰수마약류폐기목록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몰수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④몰수마약류는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하여야 한다.

⑤몰수마약류를 폐기할 때는 폐기량에 따라 보관책임자를 비롯한 2 명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하는 전 과정을 사진촬영하여 5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10 조(분양 등) ①시·도지사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2 조제 2 항·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마약류공급(분양)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 4 호서식의 몰수마약류공급(분양)목록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몰수마약류인수대장과 몰수마약류처분대장에 이를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신청자에게 인수증을 받고 인계하여야 하며, 몰수마약류인계서, 몰수마약류보관 및 인수인계조서 및 공급자의 인수증을 몰수마약류공급분양)목록에 첨부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1 조(지도·감독) ①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보관·관리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1991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04.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03.0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몰수마약류처분대장

[별지 제 2 호서식]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수인계조서

[별지 제 3 호서식]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별지 제 4 호서식]

몰수마약류공급(분양)목록

[별지 제 24 호서식] 마약법시행령 제 32 조제 1 항

몰수마약류인계목록

[별제제 26 호서식] 마약법시행령제 32 조제 2 항

몰수마약류수납대장

몰수마약류 인수 및 처분상황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법률제 6 146 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제 6305 호(관세법) 일부개정 2000. 12. 29.

법률제 6626 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2. 01. 26.

법률제 6627 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2002. 01. 26.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

제 2 조 (정의) ①이 법에서 "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 동조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동조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를 말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②이 법에서 "마약류범죄"라 함은 다음의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 40 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 6 조·제 9 조 또는 제 10 조의 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58 조 내지 제 61 조의 죄 [시행일 2000·7·1]
3.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4. 삭제 [2000·1·12] [시행일 2000·7·1]

③이 법에서 "불법수익"이라 함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0 조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61 조제 1 항제 3 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0·1·12][시행일 2000·7·1]

④이 법에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불법수익등"이라 함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을 말한다.

제 2 장 입국 및 상륙절차등의 특례

제 3 조 (입국 및 상륙절차의 특례)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상륙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어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같은 법 제 14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당시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제 4 조 (세관절차의 특례) ①세관장은 관세법 제 246 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검사시 화물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고 판명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당해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어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법률 제 6305 호]

1. 당해 화물(당해 화물에 은닉되어 있는 마약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 241 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개정 2000.12.29. 법률 제 6305 호]
2. 기타 검사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 1 항(제 1 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관세법 제 257 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검사시 그 물건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당해 마약류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 240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법률 제 6305 호]

③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한다.

제 5 조 (금융기관에 의한 신고)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불법수익등임을 알게 된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 상대방이 제 7 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②제 1 항의 경우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이를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벌칙

제 6 조 (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입등)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 9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무기 또는 10 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 억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00·1·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58 조(제 4 항을 제외한다), 제 59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동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 5 호중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제 60 조제 1 항제 1 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 및 3. 삭제 [2000·1·12]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 9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 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 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00·1·1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59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동조제 1 항제 5 호 내지 제 12 호에 관련된 행위에 한하며, 동항제 5 호중 마약을 제외한다) 또는 제 60 조제 1 항제 3 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 4 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

2. 삭제 [2000·1·12][시행일 2000·7·1]

제 7 조 (불법수익등의 은닉·가장) ①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물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하거나 가장한 자는 7 년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 1 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 조 (불법수익등의 수수) 정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

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 (마약류로서의 물품의 수입등) ①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할 약물 기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0 조 (선동등) 마약류범죄(제 9 조 및 이 조의 범죄를 제외한다), 제 7 조 또는 제 8 조의 범죄의 실행 또는 마약류의 남용을 공연히 선동하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 조 (미신고등) 제 5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 조 (국외범) 제 6 조 내지 제 8 조 및 제 10 조의 범죄는 형법 제 5 조의 예에 의한다.

제 13 조 (불법수익등의 몰수) ①다음의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제 7 조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8 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외의 재산이 혼화된 재산에 관계된 경우에 그 범죄에 대하여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 7 조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8 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 7 조제 1 항· 제 2 항 또는 제 8 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

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의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 7 조제 3 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 7 조제 3 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기타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제 14 조 (불법수익등이 혼화된 재산의 몰수) 제 13 조제 1 항 각호 또는 제 3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이하 "불법재산"이라 한다)이 불법재산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 그 불법재산을 몰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혼화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이라 한다)중 그 불법재산(당해 혼화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 15 조 (몰수의 요건등) ①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는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면서 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 8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불법수익등의 수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있다.

②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는 경우에 범인외의 자가 범죄전에 그 권리를 취득한 때 또는 범인외의 자가 범죄후 그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 16 조 (추징) ①제 1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②제 1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제 17 조 (불법수익의 추정) 제 6 조의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내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당해 기간내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의한 급부의 수량상황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금액·재산취득시기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

제 18 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6 조 내지 제 11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4 장 몰수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

제 19 조 (권리 존속의 신고) 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에 제 1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권리를 존속시키는 때에는 몰수의 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등) ①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몰수의 재판에 기한 등기등) ①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②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을 관계기관에 촉탁하는 경우에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 6 장제 1 절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형사보상의 특례)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법 제 4 조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제삼자 참가신청등의 특례

제 23 조 (고지)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외의 자의 재산 또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 또는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외의 자(이하 "제삼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수량 기타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판기일

②검사는 제삼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소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를 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참가절차) ①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삼자는 제 1 심재판이 있기 전까지(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제 1 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을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

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제 1 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 3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에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몰수가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참가신청인·참가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검사·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⑧참가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제 25 조 (참가인의 권리) 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참가인의 출석등) ①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이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을 요하

지 아니한다.

③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 참가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기타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7 조 (증거) ①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 310 조의 2 내지 제 318 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318 조 및 제 318 조의 3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에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자를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참가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28 조 (몰수재판의 제한) 제삼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삼자가 가진 재산 또는 제삼자가 지상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 2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 일이 경과된 때.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위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거나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또는 참가를 허가할 재판이 취소된 경우에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2.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때

3.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는 때

제 29 조 (상소) ①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참가인이 상소한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제 2 항의 경우에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에 있어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 33 조·제 282 조 및 제 283 조의 규정은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은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30 조 (대리인)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하여는 제삼자는 변호사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32 조제 1 항 및 제 3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제 31 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①제삼자의 소송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6 조 내지 제 28 조의 규정을, 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86 조 및 제 191 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2 조 (다른 절차와의 관계)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제삼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전절차

제 1 절 몰수보전

제 33 조 (몰수보전명령) ①법원은 마약류범죄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②법원은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부연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재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34 조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①검사는 제 33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후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을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 36 조 (몰수보전의 효력) 몰수보전된 재산(이하 "몰수보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보전후에 행한 처분은 몰수에 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47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제 50 조제 4 항 및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몰수보전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담보권의 실행으로서의 처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7 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①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 1 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④제 3 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민사집행법 제 83 조제 2 항·제 94 조제 2 항 및 제 95 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 83 조제 2 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 94 조제 2 항중 "제 1 항" 및 같은 법 제 95 조중 "제 94 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 37 조제 4 항"으로, 같은 법 제 95 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38 조 (선박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

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제 39 조 (동산의 몰수보전) ①동산(제 38 조에 규정한 것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 1 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 13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를 첩부시키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동산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 40 조 (채권의 몰수보전) ①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의 몰수보전명령에 의하여 한다.

②제 1 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 46 조 및 제 50 조에서 "제삼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⑤민사집행법 제 228 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 228 조제 1 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41 조 (기타 재산권의 몰수보전) ①제 37 조 내지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기타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의한다.

②기타 재산권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 3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제 37 조제 3 항 내지 제 6 항 및 민사집행법 제 94 조제 2 항 및 제 95 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을 요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 94 조제 2 항중 "제 1 항" 및 같은 법 제 95 조중 "제 94 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 4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 37 조제 4 항"으로, 같은 법 제 95 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42 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①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43 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 327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형사소송법 제 327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 44 조 (실효등 경우의 조치)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촉탁을 하고, 공시서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45 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제한) ①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기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절차를 할 수 없다.

②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기한부 또는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몰수보전된 기타 재산권(민사집행법 제 25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46 조 (제삼채무자의 공탁) ①금전채권의 제삼채무자는 당해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제삼채무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삼채무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삼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⑤제삼채무자가 제 1 항(제 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 247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의 "제 248 조제 4 항"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 46 조제 2 항(같은 조 제 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47 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①몰수보전되기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

류된 경우에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이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가 당해 형사사건절차에의 참가를 허가받지 못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제 5 장의 규정은 제 3 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48 조 (강제집행의 정지) ①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 47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 1 항의 결정서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 49 조제 2 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③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 1 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 1 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 42 조제 2 항의 규정은 제 3 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9 조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와의 조정) ①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를 제외한다)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 266 조제 1 항제 5 호

(같은 법 제 269 조 및 제 272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50 조 (기타 절차와의 조정) ①제 45 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의하여 각종 징수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 46 조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삼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 4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 제삼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 47 조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이들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 47 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 47 조제 2 항 본문의 규정은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권리의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또는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기타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의하여 처

분이 금지된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 48 조의 규정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1 조 (부대보전명령의 효력등) ①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절 추정보전

제 52 조 (추정보전명령) ①법원은 마약류범죄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정보전명령을 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추정보전명령은 추정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추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특정재산에 대하여 발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추정보전명령에는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추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정보전해방금액, 발부연월일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제 33 조제 4 항의 규정은 추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3 조 (기소전 추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 52 조제 1 항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 34 조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4 조 (추정보전명령의 집행) ①추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②추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 기타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개정 2002.1.26. 법률제 6627 호] [[시행일 2002.7.1.]]

제 55 조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정보전명령에 따라 추정보전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제 56 조 (추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정등의 재판의 집행) ①추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안에서 추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추정선고된 경우에 공탁된 추정보전해방금이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제 57 조 (추정보전명령의 취소) 법원은 추정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게 되거나 추정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피고인·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추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 42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58 조 (추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정보전명령은 추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

327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제 43 조제 2 항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 327 조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9 조 (추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 5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정보전명령에 따른 추정보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절 보칙

제 60 조 (송달)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추정보전명령에 따른 추정보전집행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 19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96 조제 1 항 본문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을 7 일로 한다.[개정 2002.1.26. 법률 제 6626 호] [[시행일 2002.7.1.]]

제 61 조 (상소제기기간중의 처분등) 상소제기기간내의 사건으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 62 조 (불복신청) ①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법원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4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되는 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 63 조 (준용) 몰수보전 및 추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몰수재판 및 추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공조절차

제 64 조 (공조의 실시) ①마약류범죄등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외국으로부터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다.

1. 공조범죄(공조요청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조범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이 있는 경우 또는 공조대상재산에 관하여 이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3.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 또는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이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몰수재판 또는 몰수보전을 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추정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 또는 추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추정재판 또는 추정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삼자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판절차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몰수 또는 추정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에 대하여 제 33 조제 1 항 또는 제 5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보전공조요청이 요청국의 법원이나 법관이 행한 몰수 또는 추정을 목적으로 한 보전재판에 근거한 요청이거나 몰수 또는 추정재판의 확정후의 요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가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 재산을 몰수할 경우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할 경

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켜야 한다.

제 65 조 (추정으로 보는 몰수) ①불법재산에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으로서 그 재판을 받은 자가 가지는 재산을 몰수하는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확정재판은 이 법에 의한 공조실시에 관하여는 그 자로부터 그 재산의 가액을 추정하는 확정재판으로 본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불법재산에 갈음하여 그 가액이 불법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보전공조요청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 66 조 (요청의 접수) 공조요청의 접수는 외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 67 조 (법원의 심사) ①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사결과심사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공조요청에 관계된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공조허가결정을, 그 전부에 대하여 공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공조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몰수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을 하는 경우에 제 6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시켜야 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추정의 확정재판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을 할 때에는 추정하여야 할 금액을 대한민국의 원화로 환산하여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공조요청에 관련한 확정재판의 당부에 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⑥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가 당해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조허가결정을 할 수 없다.

1. 몰수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의 경우에는 요청에 관계된 재산을 가지거나 그 재산위에 지상권·저당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들 재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

2. 추정의 확정재판의 집행공조의 경우에는 당해 재판을 받은 자

⑦법원은 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사 및 심사청구사건의 절차에 참가가 허가된 자(이하 "공조심사참가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법원은 공조심사참가인이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 또는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신문기일을 정하여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지정된 신문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공조심사참가인이 출석할 수 없어 신문기일에 대리인을 출석시킨 때 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에는 공조심사참가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것으로 본다.

⑨검사는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기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8 조 (항고) ①검사 및 공조심사참가인은 심사청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항고제기기간은 14 일로 한다.

제 69 조 (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제 70 조 (결정의 취소) ①법원은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몰수 또는 추정의 확정재판이 취소되거나 기타 그 효력이 없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공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법에 의한 몰수 또는 추정집행으로 인한 보상의 예에 의하여 보상한다.

③제 68 조의 규정은 제 1 항의 청구에 의한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71 조 (몰수보전의 청구) ①검사는 공조요청이 몰수를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판사에게 몰수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대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 67 조제 1 항의 심사청구가 있는 후에는 몰수보전에 관한 처분은 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행한다.

제 72 조 (추정보전의 청구) ①검사는 공조요청이 추징을 목적으로 한 보전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판사에게 추정보전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 71 조제 2 항의 규정은 추정보전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73 조 (공소제기전의 보전기간) ①몰수 또는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공조요청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이 발하 여진 날부터 45 일 이내에 요청국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②법원은 요청국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3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전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된 기간내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74 조 (절차의 취소) ①검사는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 몰수보전청구 또는 추정보전청구를 취소하거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원 또는 법원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의 취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75 조 (사실의 조사)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제 76 조 (검사의 처분) ①검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의 청구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하거나 실황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서류 기타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기타 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회하거나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의 청구나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 77 조 (관할법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몰수보전·추정보전 또는 영장발부의 청구는 청구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그 소속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제 78 조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 또는 법관이 한 심사, 처분 또는 영장의 발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등이 한 처분,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대하여는 이 법 제 4 장 내지 제 6 장,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공조요청을 수리한 경우에 있어 그 조치에 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을 각각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개정 99·12·31]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법수익등 은닉 및 수수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제 7 조 및 제 8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 및 자금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범위반의 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죄 및 대마관리법위반의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11 조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마약류범죄행위"라 한다)에 의하여 얻은 재산

2. 마약류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이 법 시행전에 한 마약법 제 62 조제 1 항제 2 호(미수범을 포함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43 조제 1 항제 2 호, 대마관리법 제 20 조제 1 항제 4 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대한민국외에서 행한 행위로서 대한민국내에서 행하였다면 이들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된 자금

③(몰수·추징보전에 대한 경과조치) 제 6 장의 규정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 또는 자금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의 몰수를 위한 보전 및 이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추징을 위한 보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 52 조중 "제 16 조"는 "마약법 제 70 조 단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47 조제 1 항 단서 또는 대마관리법 제 23 조제 1 항 단서"로 본다.

④(국제공조에 대한 경과조치) 제 7 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범죄로서 이 법 시행후에 행하였다면 마약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의 요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7·12·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14 조 생략

부칙 [99·12·31]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칙 [2000·1·12]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9 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 6305 호]

제 1 조(적용례)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8 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 제 6626 호]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칙 [2002.1.26. 법률제 6627 호]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

국무총리훈령 제 424 호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마약류 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수사·단속·치료·재활·교육·홍보 관련 기관간 협조사항
3. 그밖에 마약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정보원제 2 차장 대검차장검사 관세청장 경찰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정홍보처차장 청소년보호위원장 해양경찰청장
2.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 종사자 등 마약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

제 4 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 5 조 (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회의)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국무조정실과 제 3 조제 3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마약류 관련 단체·연구기관과 학계·언론계에 종사하는 마약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 실무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수사·단속·정보분과위원회와 치료·재활·교육·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⑥ 수사·단속·정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 4 항의 위원 중 외교통상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청·해양경찰청의 해당 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치료·재활·교육·홍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정홍보처·식품의약품안전청·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제 4 조 내지 제 6 조 규정은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8 조 (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이 되고, 실무협의회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 9 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요청)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 조 (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 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